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제5차 학술 발표회·제8차 인권교육포럼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

- 일 시 : 2009. 12. 12(토) 13:30 - 19:30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 주 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인권 교육 포럼



행사 프로그램

| 시 간 | 세 부 내 용 |
|---|--|
| 13:3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 등록 및 입장 |
| 1부 : 개회식 및 기조발제 14:00-14:50 음악관 103호 |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이대성(경기 행신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사회자 ○ 국민의례 다같이 ○ 개회인사 및 내빈소개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심성보 대표(부산교대) ○ 축사 김옥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p>[기조 발제]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발표 : 박경서(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전 UN 인권대사)</p> |
| 14:50-15:00 | 휴 식 |
|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5:10 -17:00 [1분과] 음악관 103호 16:30 -18:00 |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교육 관련 법의 제·개정 방안</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p> <p>[주제 1]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요청과 과제 발표 : 정경수(숙명여대), 토론 : 변순용(서울교대), 송병춘(변호사)</p> <p>[주제 2] 인권교육의 현황과 법·제도적 대처의 문제점 발표 : 이로운(국회의원 보좌관), 토론 : 은우근(광주대), 정승재(장안대)</p> <p style="text-align: center;">휴 식</p> <p style="text-align: center;">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의 중등 법과 인권교육 관련 쟁점과 과제</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고래역(서울 상계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p> <p>[주제 1] 중학교 ‘사회’의 법과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발표 : 이수정(파주 금촌중), 토론 : 이동희(경북 경산고), 이은주(서울 양서중)</p> <p>[주제 2]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발표 : 구정화(경인교대), 토론 : 천희완(서울 대영고), 안은례(경북 영천여고)</p> <p>[주제 3]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쟁점과 과제-정치과목과의 통합문제를 포함하여 발표 : 이대성(경기 행신고), 토론 : 임경수(공주대), 전윤경(강원 횡성여고)</p> |

| 시간 | | 세 부 내 용 |
|--|---|--|
|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5:10 -17:00 | [2분과] 음악관 102호 16:30 -18:00 | <p style="text-align: center;">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 나달숙(백석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이사)</p> <p>[주제 1]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발표 : 김상돈(서울 상원초), 토론 : 김광수(서울교대), 고기복(한국해외봉사단 원연합회)</p> <p>[주제 2]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발표 : 박상준(전주교대), 토론 : 김현희(평택대 다문화교육센터), 崔棧(안성사회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p> <p>[주제 3]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발표 : 김윤나(한국교육개발원), 토론 : 강룡(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강사), 최영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p> |
| 3부: 종합토론 및 총평 18:00-19:00 음악관 103호 | |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 성위석(경북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p> <p>[종합 토론] 각 세션 사회자 발표 및 자유 토론</p> <p>[총평] 심성보(부산교대, 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p> <p>[폐회 선언] 허종렬(서울교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p> <p>* 만찬의 시간(장소 : 두부촌) 다같이</p> |

차 례

| | |
|--|-----|
| 개회인사 및 축사 | 1 |
| 허종렬(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 · 심성보(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 · 김옥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
| [기조 발제]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7 |
| 박경서(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전 UN 인권대사) | |
| | |
| <공통> 인권교육 관련 법의 제·개정 방안 | |
| [주제 1]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요청과 과제 | 17 |
| 정경수(숙명여대) | |
| [주제 2] 인권교육의 현황과 법·제도적 대처의 문제점 | 19 |
| 이로문(국회의원 보좌관) | |
| | |
| <1분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의 중등 법과 인권교육 관련 쟁점과 과제 | |
| [주제 1] 중학교 ‘사회’의 법과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 35 |
| 이수정(파주 금촌중) | |
| [주제 2]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 51 |
| 구정화(경인교대) | |
| [주제 3]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쟁점과 과제 | 69 |
| 이대성(경기 행신고) | |
| | |
| <2분과>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방안 | |
| [주제 1]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 101 |
| 김상돈(서울 상원초) | |
| [주제 2]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 135 |
| 박상준(전주교대) | |
| [주제 3]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 161 |
| 김윤나(한국교육개발원) | |

개회 인사

존경하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법과 인권 및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로서는 통한 제5차 학술발표회이며, 인권교육포럼으로서는 통산 제8차 포럼이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인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세계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선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인권 존중의 풍토와 그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인권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이번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술 발표회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의 중등 법과 인권교육 관련 쟁점과 과제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그동안 법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고등학교 '법과 사회' 심화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정치와 통합하여 축소됨으로써 실질적인 법교육 실천에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2008년에 제정된 법교육 지원법의 근본 취지와 선진 법치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원안대로 '법과 사회' 과목이 독립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차원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도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 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학회는 작년 9월 6일에 창립된 이후 벌써 2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함은 물론 네 번째 학술발표회를 갖고 매월 연구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통권 제3호의 학회 논문집을 간행하는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이나 공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와 제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기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학술발표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흔쾌하게 공동개최의 의사를 밝혀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심성보 공동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 주신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박경서 석좌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 발표회에 후원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 당국 및 음악교육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및 인권교육포럼의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2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종렬

개회 인사

존경하는 인권교육포럼 회원, 그리고 평소 이 땅의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이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땅의 평화로운 사회 구현을 통한 인권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선진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선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인권 친화적 문화의 조성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인권친화적 풍토의 조성은 미래시민의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실천적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은 세계 11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출산율은 OECD 국가중 꼴찌이고, 자살률은 두 번째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러한 지표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학생들의 지나친 입시과열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이 황폐해지면서 이를 우려한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지만 국가교육정책의 변화나 일선학교현장의 개선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위대한 동력이었던 교육이 아직까지 세계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사회의 선진화는 매우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극복을 위해 인권교육포럼은 그동안 인권의 철학적 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유교와 인권, 불교와 인권, 권리와 인권 등의 이론적 논의를 해 왔으며 동시에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실천을 위해 법과 인권교육, 인격교육과 인권교육 등의 실천적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2009 개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단일문화의 부정적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사회에서의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과서에 친인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교육포럼의 기조와 매우 부합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회를 개최함에 있어 기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학술발표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우리사회의 인권 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법과 인권교육학회의 허종렬 회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사회의 인권구현에 헌신해 오신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박경서 석좌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 발표회에 장소 마련을 위해 수고해 주신 법과 인권교육학회회장님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당국 및 음악교육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인권교육포럼 및 법과 인권교육학회의 실무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단순히 이론적 논의를 넘어 학교 교육현장에 친인권적 풍토의 조성에도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며, 오늘의 행사가 진정 우리가 당면한 척박한 인권현실을 변화시키는 뜻있는 행사를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12일

인권교육포럼 상임대표 심성보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옥신입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 주신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님이시자 전 UN인권대사와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신 박경서 교수님과 각자 맡고 계신 일과 역할 속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흔쾌히 수락해주신 발제와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의 관계자 분들은 물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일을 제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의 92%, 그러나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겨우 5.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두 개의 대비되는 수치가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주었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법'의 제정을 위한 내부 연구와 각계 의견 수렴작업을 거쳐 인권교육을 법적 제도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초·중·고등학교 및 법무·경찰·군대 등 공공분야와 언론·기업·평생교육 등의 일반시민 분야까지 인권교육을 확대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 장애,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인권교육법은 인권교육에 대한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담은 기본법이자, 우리 사회 각 영역-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촉진·지원하는 지원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200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후 ‘인권교육훈련선언’ 작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교육과 그 훈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인권교육이 학교·공공·시민 각 분야에 법적·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인권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은 앞으로도 이 같은 학술대회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허종렬 회장님을 비롯해, 학회 및 포럼 회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개최 장소를 제공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발제]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발 제 자 : 박 경 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전 UN 인권대사

국제인권동향으로서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박 경 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전 UN 인권대사)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박경서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쁘고 분주한 연말에 즈음하여 국가인권위 인권교육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침해와 폭력, 갈등, 분쟁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용과 인권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 사회를 잘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교육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대로 돌아가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과 기술, 예술, 문화를 전수하고 가르치고 대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제도입니다.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모든 개인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평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고 분쟁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인권침해와 폭력적 갈등을 방지하고 평등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용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공동체(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에서는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체계(Life-long Education system)로의 수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교육이 선량하고 관용적인 시민으로의 성장, 발전과정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인권교육이 국제인권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인권교육훈련을 인류 공동이 실현해야 할 책무로 인식하고 선언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조항과 항목을 구체화하여 각 개인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을 인권친화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인권교육포럼에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유엔은 인권교육 10년(1995-2004)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05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의 개시 및 2009년까지도 연장 운영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범국가적, 범사회적 준거 틀(Frame work)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에 대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은 또한 2009년 1차시기의 종료를 앞두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시기 계획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기구 및 부설기관, 지역조직(regional agency), 국가인권기구(NI)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처럼 세계인권공동체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엔 새천년선언에 포함된 개발목표 중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노력으로서 인권교육의 장기적이고 평생교육 과정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등과정의 기존 학교체계 내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반면 인권교육의 개념정의나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포괄적인 목표나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실현함에 있어 다소 한계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Working definition 및 인권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2004)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목표는 모든 공동체와 사회가 인권실현에 공동의 책임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평등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적 절차 안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3조’, ‘아동권리협약 제 29조’ 등 인권교육에 관한 구체화된 국제인권협약은 다수 있으며 이 모든 문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의 공유, 지식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교육, 훈련, 정보전달 등을 의미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핵심사항으로는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이라는 점과 이러한 과정은 ‘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에서의 인권’ 등의 두 가지 요소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방법 등의 모든 요소들이 인권을 학습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권교육은 제도 안에 모든 행위자의 모든 인권의 존중과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의 전 인류적인 인권교육 이해와 중요성 공유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으로 구체적으로 천명하기에 적절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II.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의 작성 및 주요내용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작성과정

2007년 6월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인권소위원회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엔 메카니즘 속에서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주제별 사안(thematic issues)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보고 후 적절한 후속조치와 해당 주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이사회가 자문위원회에 연구 요청한 주제는 인권교육훈련선언, 식량권, 실종자, 장애인의 인권, 여성인권, 민주적인 국제질서의 향상, 한센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사항이며 사안별로 회의를 통한 연구진행 사항 및 중간보고 등의 일련의 과정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인권이사회 결의안 6/10(HRC resolution(6/10))을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에 대한 작업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5명 위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훈련 초안 작성그룹(Draft Group)이 구성되었으며, 초안 워킹그룹 의장인 Halima Embarek Warzazif 와 Emmanuel Decaux 보고관을 중심으로 Hector Félipe Fix Fierro, Vladimir Kartashkin, Purificacion V. Quisumbin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본 선언의 배경을 우선 세계인권선언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교육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과 1993년 6월에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실행 계획, 그리고 1994년 선포, 1995년 실행된 유엔 인권교육10년, 200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후 인권이사회 내에서 인권교육훈련 선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결의를 무투표로 수용하여 인권교육과 습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08년 8월 Recommendation 1/1에서는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 작성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작업의 목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 작성팀은 총 5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에 관한 중간 과정보고 문서를 2009년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초안 작성팀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Resolution 59/113)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기본 틀로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초안팀은 초안 작업을 수차례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분과회의나 소그룹별 모임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비작업을 위한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 분석, 결과반영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NGO와 공식회의를 통한 의견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주요내용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 작성그룹 보고관인 M. Decaux는 OHCHR을 통하여 정부, 국가 인권기구, 정부간기구, 지역기구, NGO 등에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설문지를 전달하여 공식적인 의견과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¹⁾

또한,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팀은 본격적인 초안 작업에 앞서 해당 선언에 포함되어 할 기본적인 개념과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문서화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lement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urther work and consultations에서는 OHCHR과 유네스코의 인권교육 분야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인권친화적 문화의 기반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훈련은 국가적 보편적 의무의 보장과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지역기구, OHCHR, 국가인권기구, NGO 등의 협력에 의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변화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게 합니다. 수차 강조한 바 있듯이 인권교육은 권리로서 인식되고 접근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권교육훈련선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교육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적용되는 인권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 양자가 모두 활용되어야 하고 교육학 뿐 아니라 법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의 체계구성과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초중고교육과 대학을 포함한 학교체계, 사회복지사, 법조인, 의사 등의 전문가 양성과정, 사법부, 입법부, 법집행기관, 군대, 기업, 언론, 평생교육 등을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하지 막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교육 또한 고민의 지점이 되어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사회, 다양성과 다원화, 인내와 관용 등 또한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1) 1차 설문지 수거결과 : 정부(23부), 국가인권기구(16부), 정부간 지역기구(8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43부) 등 총 90부로 나타남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개념적 틀(Conceptual Paper)에서 인권교육 목표를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의 평생교육화, 법적 기반을 둔 인권교육 구체화, 인권을 교육시키는 것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사항의 중요성인식, 성인지적 관점 및 차별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권교육은 피교육자와 교육자 간의 소통할 수 있고 쌍방향적인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육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고전적 매체 즉, 출판과 번역, 여름방학프로그램과 교육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원격교육과 정보자료의 발전, <e-learning> 등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화 등의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이며 인권교육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교육 방법들 간의 통합과 다양한 미디어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III.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국제인권교육상의 함의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영문 초안이 공식으로 발표되고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언이 완성된 국제인권조약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정보완작업(progressing process),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과정, 국내외의 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될 것입니다.

인권교육훈련선언 초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인권이사회가 유엔 매카니즘 내의 생크탱크(Think tank)에게 요청한 첫 번째 과제이고 매우 야심적이고 ‘큰’ 인류적 인권개발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수년간 지켜봐야 할지 모릅니다. 세계선언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수면에 떠오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인권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 자체가 인류가 공히 인식해야 할 기본 인권인 동시에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훈련선언이 선언이 갖는 보편성과 추상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원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V. 나오는 말

국제인권교육동향에 관한 기초발제 준비를 하면서 인권위가 지난 시간동안 개발하고 보급해온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이 국제인권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과는 그리 멀리 않음을 발견하고 반갑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인권위는 향후 인권교육훈련선언과 관련하여 인권이사회 및 OHCHR 등의 그 밖에 인권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모니터링 및 일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하여 initiative와 인권교육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책임임을 인식합니다.

인권교육훈련선언 및 기타 유엔인권교육 매카니즘이나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권교육관련 법 제정의 근거나 국내 인권교육 발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추후 구체적인 회의 및 논의안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개진 등 주요 인권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권교육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교육포럼 등의 인권교육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인권위의 다양한 인권교육 경험과 지혜가 인권교육훈련선언 등 국제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인권위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해 온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 [주제 1]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요청과 과제**

발 제 자 : 정 경 수
숙명여대

공통 - [주제 2]

인권교육의 현황과 법·제도적 대처의 문제점

발 제 자 : 이 로 문
국회의원 보좌관, 법학박사

인권교육의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와 개선방향

이 로 문 (국회의원 보좌관, 법학박사)

I. 서론

인권은 천부적이며 21세기는 인권의 세기라고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이란 말이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인권이란 말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침해와'와 '보호'란 말이 따라 붙는다. 인권침해나 인권보호란 말이 끊임없이 거론된다는 것은 아직도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인권이 천부적이라고 할 만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을 천부적인 권리 그 자체로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인권의 실질적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부적 인권은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회에서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 인권을 실천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인권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천부적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인권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현실의 사회에서 인권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인권은 천부적으로 존재하지만 교육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인권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을 제도화하지 않아도¹⁾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의식이 성숙된 사회에서는 굳이 인권교육을 하지 않아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제도에 의해서 학습되는 인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가 아닌 사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인권을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약칭한다)의 설치를 계기로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나, 아직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이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인권교육법제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권교육의 현황

1. 인권교육의 의의 및 목적

(1) 인권교육의 의의

인권이란 개념 자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교육 역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인권교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창조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definition)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권교육을 현재 존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좋은 실천의 사례를 포착할 수 있고, 성공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을 어렵듯이 감지할 뿐이다”²⁾라는 말이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충분히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에는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하고 인권존중에 대한 태도와 품성을 키우는 것, 인권침해에 대한 극복 및 대응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³⁾

2) Flowers, Nancy,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A Survey of Human Rights Education, Bertelsmann Verlag, 2003(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4호, 97면 재인용).

3)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제2조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인권교육의 목적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은 피교육자의 의식과 감수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체적 인권의 실천을 강화시키는 구체적 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

2. 인권교육의 주관기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인권위와 법무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에서 법무부 업무에 한정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에서는 학교 및 공공기관 전반 및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인권교육의 대상

인권교육이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은 구금·보호시설, 군대 등이다. 이들 기관은 과거에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현재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초·중·고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인권교육, 군대·검찰·경찰 및 교도행정에 대한 인권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인권교육, 언론·기업 그리고 일반시민 등 시민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인권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III. 인권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1. 문제의 제기 : 현행법상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현행 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는 인권위의 업무를 나열하면서 제5호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들고 있다. 또한 제2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제3항에서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6조의 규정은 학교의 인권교육에 한정된 것처럼 보인다. 제1항의 법문은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것이다.

2. 외국에서의 인권교육 입법

(1) 일본

일본은 2000년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⁴⁾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부(제4조), 지방자치단체(제5조), 국민의 책무(제6조) 등 추상적·선언적 규정들이 많다. 다만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제8조), 인권교육을 위해 재정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4) 당시 여당(자유민주당, 공명당, 보수당)이 2000년 11월 2일에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상정하였으며, 2000년 11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29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部落問題研究所編, 資料と論評-人權教育及び人權啓發の推進に關する.法律, 部落問題研究所, 2001, 44頁).

인권교육은 법무성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된 성격을 가진 인권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법무성이 주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일본이나 페루와 같이 독립된 인권교육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헌법·행정명령·대통령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헌법에 대한 학습을 포함시켜야 하고, 인권존중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 인권교육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제20호(1986년)에서는 체포 및 수사인력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제27호(1986년)에서는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학습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3) 페루

페루는 2002년부터 “인권교육정책과인권의전과및교육을위한국가계획수립을위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서는 “헌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하여 페루의 헌법, 인권 그리고 인권 관련 국제법을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그리고 대학 이외 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간과 군의 모든 교육체계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칠 것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헌법교육에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물론 헌법의 최상위적 지위,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그리고 법 앞에 평등권과 관련된 원칙들의 전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인권 및 인권 관련 국제법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물론 국제조약과 국제협정의 완전한 발효와 엄격한 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유럽과 미국 등의 인권선진국은 유엔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수준 및 전반적인 사회의 인권수준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이 없더라도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권교육 법제를 위한 노력

(1) 법제화의 필요성

1) 법제화에 대한 관심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교육법의 필요성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구급·보호시설, 군대,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대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일단 공감할 수 있다.

2) 인권교육의 계속성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위를 통해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나, 아직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체계적인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인권교육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법상 근거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일적이면서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체계화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실효성 내지는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기관으로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경우 그 체계화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진다. 교육체계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칠 것을 의무화한 페루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⁵⁾

5) 페루의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2002. 5. 9. 법률 제 27741 호) 제1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예산의 확보

예산이 없이는 인권교육을 할 수도 없다. 비록 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현행 법 하에서는 인권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인권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물론 인권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권교육관련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인권위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7대 국회 정성호안에서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제3조2항)을 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5) 교육법제화의 일반화

교육에 관련된 법률만 하여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는 과학교육진흥법,⁶⁾ 경제교육진흥법,⁷⁾ 법교육지원법,⁸⁾ 식생활교육지원법,⁹⁾ 문화예술교육지원법,¹⁰⁾ 통일교육지원법,¹¹⁾ 환경교육지원법¹²⁾ 등이 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는 미디어교육진흥법안,¹³⁾ 영어교육진흥법안¹⁴⁾이 발의된바 있었다.

이처럼 각각의 영역에서 교육지원법 내지는 교육진흥법의 형태로 교육법제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나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법률안 모두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과연 인권교육법 이상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대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제정 1967. 3. 30. 법률 제1927호

7) 제정 2009. 2. 6. 법률 제9409호

8) 제정 2008. 3. 28. 법률 제8992호

9) 제정 2009. 5. 27. 법률 제9719호.

10) 제정 2005. 12. 29. 법률 제7774호.

11) 제정 1995. 2. 5. 법률 제5725호.

12) 제정 2008. 3. 21. 법률 제8949호.

13) 2007년 4월 4일 이경숙 의원 등11인이 발의하였으나 2008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14) 2007년 3월 8일 신학용 의원 등 19일이 발의하였으나 2008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2) 법안발의 및 심사과정

1) 법안발의

국회에서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17대 국회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¹⁵⁾ 소속 정성호 의원이 인권교육법이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여 간담회 등을 거쳐 법안을 성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성호 의원은 2005년 초까지 법률안을 완성한 후 2007년 8월 29일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¹⁶⁾ 인권위에서는 2007년 11월 5일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를 통해 제출하였다.

2) 심사과정

2007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¹⁷⁾ 2008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¹⁸⁾에서 심사하기 시작하였으나¹⁹⁾ 2008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인권교육법 심사과정에서 주로 제기된 문제는 ①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②제정안이 없어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 ③통과시킬 시급성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²⁰⁾ 제1소위에서 한 번의 심사를 거친 후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임기종료로 폐기되어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 17대 국회에서 인권교육법이 계속심사를 이유로 임기 말 자동으로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인권교육법은 다분히 정치 논리에 의해 심사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같다.

1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17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이었다.

16) 인권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17) 법률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에 회부되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18)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소관법률을 심사하며, 제2소위원회는 타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에 대한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한다.

19) 제27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3호 30-33면 참조.

20)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0면 참조.

(3) 법안의 체계 및 내용 비교

1) 목적 및 정의

목적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정성호 의원안이나 정부안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위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2)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정부안은 제3조에서 5항에 걸쳐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성호의원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본원칙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법체계적으로 볼 때 부합하지는 않는 면이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안은 추상적 선언규정(제5조제1항)을 둔데 반해, 정성호안은 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고, 그 밖에 정부안은 인권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규정(제5조제2항)을, 정성호안은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제3조2항)을 두고 있다.

4) 인권교육의 실시

정부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부여한데 반해, 정성호안은 인권교육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에 연2회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5) 국가 등의 지원

정부안은 국가, 지자체의 지원, 인권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면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성호의원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6) 인권교육의 소관부처

정부안은 인권위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준인 반면 정성호의원안 거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7)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정부안은 인권위는 인권교육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성호 의원안은 인권위 위원장의 인권교육시설에 대한 인가권, 인권위 위원장의 인권교육강사 관리·운영, 인권위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8) 기타

정성호의원안에서는 인권교육위원회 포상이나 포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인권교육법제의 개선방향

(1) 인권교육관련법의 범형식

독립된 인권교육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인권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법이 왜 필요하고, 제정의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인권교육법의 성격

인권교육법이 지나치게 선언적 또는 추상적 규정으로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권교육의 구체적 영역, 인권교육의 주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인권교육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민간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인권교육 인증제도 등 최소한 인권위가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보다는 구체화되어야 한다.

(3) 인권교육의 주체

법무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발, 인권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그리고 인권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강사의 양성 등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정부 내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정책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를 인권교육의 소관부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¹⁾ 법무부에서도 인권국을 두고 있는 것

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인권국과 인권위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영역이 획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한 문제 역시 이에 따라 정해지면 되리라 본다.

인권교육이 교육이라는 이유로 교과부에서 인권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인권교육은 인권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계획과 교육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체적으로 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시행지침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협조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무엇보다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은 인권위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록 인권위가 행정부 내에서 모든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능을 가진 행정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권고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률에 의해 조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집행기능과 인권교육에 관한 총괄·감독 권한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인권교육의 대상

인권교육의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민간사업장으로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민간사업장에게까지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사업장의 다양한 상태와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아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²³⁾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학교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나 대학교의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율성과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학교를 인권교육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는 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인권가치의 확산을 위한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제출한 의견이다.

22) 정성호 의원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의견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1차 시기(2005~2007)에 대한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한 제59차 유엔총회에서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행전략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²⁴⁾.

IV. 결론

우리 사회는 의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법제도에 의해 의식을 바꾸고 의식의 변화에 의해 사회가 변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법제도 그 자체에 의해서 사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를 수반하지 않고 의식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의해 제도가 정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법제도에 의해 의식의 전환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법제도 그 자체에 의해서 사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을 법제화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이로써 인권존중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비록 인권위의 설치를 계기로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이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언적·추상적 규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인권교육의 주관기관, 인권교육의 대상,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인권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대

24) 인권위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인권공동체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인하대(2007.10.31) 및 한양대(2007.11.1)와 '인권교육·연구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을 맺음. 이에 따라 해당대학들은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등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인권교과목을 강화하는 등 인권관련 교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해당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권위와 해당대학은 인권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소속 구성원의 인적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함. 또한, 지난해에는 전남대와 영남대를 각각 광주·전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매년 각 50명 이내 대학원생의 인권현장 실무수습을 4주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주관기관은 인권위로 하며 법무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등의 유관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대상 역시 현재와 같이 초중고학교 및 국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경우 인권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인권교육 우수사업체 등으로 인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권전문가 내지는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고, 교육기관 내지는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및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인권교육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인권교육법제가 아닌 인권법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직접적인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법은 인권위라는 조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내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인권법(또는 인권보호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교육법으로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⁵⁾ 인권법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구체화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영역에서 인권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인권위법은 순수하게 조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며, 인권교육법은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25) 일본의 경우에는 인권옹호시책추진법과 인권교육 및 인권계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옹호시책추진법에는 인권옹호시책추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편), 사람생각, 1999.

이재호, 인권교육의 재정립과 실천방향 모색,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2008.

이로문, 생명과 법-원치않은 아이, 인체,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MJ 미디어, 2004.

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4호.

部落問題研究所編, 資料と論評-人權教育及び人權啓發の推進に關する.法律, 部落問題研究所, 2001.

Flowers, Nancy,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A Survey of Human Rights Education, Bertelsmann Verlag, 2003.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71차-법제사법소위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7년 11월 21일.

1분과 - [주제 1]

중학교 '사회'의 법과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발 제 자 : 이 수 정
파주 금촌중학교 교사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교육

이 수 정 (파주 금촌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은 두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단원은 '우리의 생활과 법'으로 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또 하나의 단원은 '인권보호와 헌법'으로 인권과 헌법을 연관지어 내용요소를 구성하였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요소가 두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함께 학계와 교육현장의 법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권'이 대단원의 주제로 등장한 것 또한 민주화로 인한 권리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과목이 신설된 이후 법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법교육의 강화¹⁾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강화이루어지고 있지만 법교육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고등학교 '법과 사회'과목에 맞추어 진행되었기에 중학교 법교육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초·중·고의 법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10학년 사회에서는 법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법과 사회'과목이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모습이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중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모습을 재음미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을 진단하는 것은 법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일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 사회과에 '인권'이 대단원의 주제로 설정된 이상 그동안 중학교 사회과에

1) 우리나라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의 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사회과 교육에서는 법교육을 어떤 목적 지향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왔는지, 그 속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논의들은 무엇이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교육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인권의 내용은 어떻게 가르쳐져 왔는지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교육을 분석해 보고, 법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II.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 교육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과 인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 따라 법과 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과 인권 교육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분석과 각 교육과정별 시기 구분은 2000년 당시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²⁾’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 교육 분석³⁾

제1차 교육과정기(1955~1963)에서는 중학교 사회과를 사회 생활과라 칭하고 지리, 역사, 공민 세 가지 분과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별도의 교육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공민 부분 교육의 목적을 ‘민주 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민주 국가 사회의 공민으로서 올바른 인

2)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의 교육과정 시기 구분은 교육과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하거나 고시한 시기에 따른 것으로, 그 시행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3)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생활 태도를 계발시킴으로서 유능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냄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각 학년별 교육 내용요소 중 법과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1학년에서 공동 생활의 규율 필요성과 제정을, 2학년에서는 민주 정치의 기초 이념과 통치구조, 선거권을, 3학년에서는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개인의 가치와 기회균등을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법교육은 내용요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정치 교육의 일환으로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3학년에서 제한된 분량으로 제시되었고 인권의 내용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기회 균등의 원리 두 가지만 제시되었다. 이 시기의 공민 분과의 학년별 수업 시간은 주당 1시간으로 하였던 점과 공민 분과의 내용요소가 1학년 77개, 2학년 71개, 3학년 66로 구성되었다는 점, 법교육의 대부분이 통치구조의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의식의 성장과 인권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4~1973)에서는 '민주적 제 원칙과 기능을 이해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고...'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법과 인권의 내용은 3학년 1단원과 2단원에서 제시되었다. 1단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4단원에서는 민주 정치와 제도를 내용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법과 인권교육은 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주주의 생활의 원리와 실지를 이해시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결의를 굳게 한다.'라는 3학년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공교육을 위한 민주 정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공산주의 가치를 주입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을 뿐 시민사회의 법과 인권이 교육되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에서도 제2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요소를 단원별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법과 인권 내용은 3학년 1단원과 2단원에서 제시되었다. 1단원에서는 민주 정치의 원리와 민주 정치 체제의 특성을 내용요소로 설정하였고, 2단원에서는 법의 종류와 필요성을 내용요소로 구성하였다. 3학년 목표로는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 인식과 민주 사회 구성원의 태도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성은 법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단원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준법정신을 통한 사회 안정만을 강조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내용요소는 찾기 어려웠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에서는 사회과 목표로 국민적 자질 육성을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법과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1학년과 3학년에서 제시되었다. 1학년 네 번째 단원에서는 민주정치의 특징을,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민주사회에서의 법을 내용요소로 하였다. 3학년 과정에서는 네 번째 단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포함한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을 요소로 하였다. 이 시기의 법과 인권교육의 특징은 제3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준법을 강조하였지만 헌법 내용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내용요소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에서는 사회과의 목표로 민주 시민 자질 육성을 설정하였다. 법과 인권에 관한 내용은 2학년 네 번째 단원과 다섯 번째 단원에서 민주 정치의 특징과 원리 그리고 법의 의의와 준법을, 3학년 첫 번째 단원에서 건국이념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요소로 하였다. 대체로 제4차 교육과정기와 비슷하지만 제4차 교육과정기의 1학년 내용요소가 2학년에 편제 되었다는 것과 사회과의 목표가 국민이 아닌 시민의 자질 육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에서도 사회과의 목표를 민주 시민 자질의 육성에 두었다. 3학년 2단원의 내용요소로 민주 정치 원리와 제도를, 4단원의 내용요소로 개인 생활과 법, 민주주의의 확립과 법, 현대 복지 국가와 법등이 제시되었다. 법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이 시기의 특징은 민주 시민 의식이 강조되었으며, 인권 사상의 발달, 기본권 보장,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사회법 영역이 명시적인 내용요소로 교육과정에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이해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준법을 강조하지만 그 목적이 사회질서 유지와 더불어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고 밝히 점도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교육 관련 내용과 다른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1997~현재)에서도 사회과의 목표를 민주 시민 자질의 함양에 두었다. 2학년 5단원 내용요소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정의, 복지, 시민 사회와 시민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단원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의 분류, 사법과정과 절차, 사회법의 기본원리와 특징,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을 주된 내용요소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양이 많아졌지만 법교육을 다루는 단원은 여전히 하나의 단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제6차에 있었던 인권 사상의 발달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대체로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목적으로 법과 인권교육이 이루어졌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기에서의 법과 인권교육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구

성되었으며 내용요소도 미약하였다. 더욱이 별도의 단원으로 법교육의 내용이 편성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이며 인권을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명시한 것은 제6차부터이다.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의 내용은 여러 단원에 산재하였고, 정치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하여 편재되었다. 또한 기본권에 관한 교육이 제4차 교육과정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인권과 관련지어 내용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미약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만 볼 수 있었다.

2. 기존 사회과 법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

사회과교육에서 법교육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박성혁, 2005:36; 박용조, 2009:22). 비판적 논의들은 주로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 법교육은 전문법학교육이나 교정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법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의 법적 문제나 쟁점을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준법 의식을 갖춘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성혁, 2005:64). 그러나 기존의 사회과 법교육은 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가치 주입을 통한 준법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적 자질의 중요한 요소인 가치판단력과 문제해결력과 같은 사고력 향상을 위한 목표 달성은 미약했다는 것이다(박성혁, 2005:70).

이러한 법교육의 목표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맥을 같이 하여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제기 되었다. 내용에 관한 비판은 주로 법교육 내용 선정의 적정성, 학습 가능성 등에 관해 제기 되었다. 내용 선정의 적정성은 교과서에 제시된 법적 지식 범위, 탐구를 위한 법적 사례의 비중과 적절성의 문제이다.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성문화된 조항을 무비판적으로 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응용력이 떨어지며, 비판적 접근이 차단된 법교육은 수동적인 시민상을 길러냄으로써 기존의 법질서를 강화한다(김명정, 2003:26). 이는 법적 사고력 신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법적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중심 학습이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들도 그 적정성에 비판이 제기된다.

학습 가능성의 문제는 법교육과정이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어렵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교과서가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고, 교사의 수

업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교과서이어야 하는데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2학년 7단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것이다(박성혁 외, 2005:73). 학습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개념이 서술되고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성혁, 2006:47)

법교육의 방법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기존의 강의식 내지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종래의 교과서는 개념위주의 학습으로 강의식 수업 외에 다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방식으로는 현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역동적 변화들을 다루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김명정, 2003:30). 법의 준수를 강조한 나머지 법적 규율의 규범적 전제조건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을 소홀히 해왔다(이기우, 1994: 179). 이러한 비판들은 법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이 사고의 출발점 내지 촉진과정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를 이용한 토론중심의 법교육(박성혁, 1998; 박상준, 2003; 박용조)이 제안 되었다.

III.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 교육

앞 장에서 지적하였던 법교육에 관한 비판들의 보완을 추구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법교육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인 7학년에서 두 개의 단원으로 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단원으로 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였던 것에 비해 법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인권과 헌법을 관련지어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살펴보고 앞 장에서 살펴본 기존 법교육의 비판점들을 중심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009개정 교육과정의 9단원은 '우리 생활과 법'이라는 제목 하에 법의 의미와 사법제도, 시민의 권리와 법적 쟁점의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10단원에서는 '인권 보호와 헌법'라는 제목하에 인권과 헌법의 관계,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 보호 수단, 정부의 형태, 기본권 실현과 타인의 권리 존중을 내용요소로 하였다. 주요 내용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09 개정 중학교 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

| 영역 | 내용요소 |
|-----------------|--|
| <7학년> 우리의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과 법의 관련 - 법의 기능(법은 분쟁 예방의 도구) - 사법 제도와 원리 - 생활속에서의 권리 행사와 법의식 - 법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
| <7학년>인권 보호와 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 -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 보호 수단 - 우리 헌법이 구현하려는 정부의 성격과 형태 - 기본권 실현과 타인의 권리 존중 |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9단원과 10단원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법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의 약속이며,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는 도구임을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분쟁 해결의 수단과 제도를 탐색한다.”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 원리, 보호 수단, 그리고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 상의 내용체계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헌법의 의미를 인권 보장의 수단으로 제시하여 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계를 부각하였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일선 현장에서 교과서 채택을 위하여 심사한 교과서의 수는 무려 15개중에 달한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전시본)를 분석하였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내용의 기본 구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09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법교육 내용 구조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주요내용 |
|---------------|----------------|----------------|--|
| 우리의 생활과 법 | 일상생활과 법 | 법의 의미 | 법의 의미, 사회규범, 법과 일상생활의 관련성 |
| | | 여러 가지 법의 영역 | 법의 종류(사법, 공법, 사회법) |
| | | 법의 목적과 기능 | 법의 이념(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분쟁을 예방하는 법 |
| | 사법제도와 원리 | 사법의 의미와 중요성 | 사법의 의미, 우리 나라의 사법기관, 사법의 과정 |
| | | 재판의 종류 | 재판의 종류 |
| | |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 제도 | 사법권의 독립 이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심급제도, 사법과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
| | 시민의 권리 행사와 법의식 | 일상생활의 권리 | 시민의 권리(공권, 사권, 사회권)와 의무 |
| | | 정당한 권리 행사 | 권리 행사의 방법(고소, 고발), 준법정신 |
| | |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 법적 쟁점의 해결 방안 |
| | 인권보호와 헌법 |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 | 인권 의식의 성장 |
|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 | | 헌법과 인권의 관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
| 헌법의 기본 원리와 보호 | |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의 특징,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 | | 헌법의 보호 | 헌법 보호의 의미, 헌법 보호의 수단(권력분립, 헌법 재판소) |
| 헌법에 따른 정부의 구성 | | 정부의 구성 | 정부의 의미,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 |
| | | 정부의 성격과 형태 | 정부형태(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 |
| 기본권 실현과 시민의식 | | 기본권의 행사 | 기본권 침해의 구제 수단 |
| | | 권리 존중과 시민의식 | 타인의 기본권 존중, 양보와 관용의 시민의식 |

금성출판사의 내용구성의 기본 체계는 생각열기, 본문, 활동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움자료와 생생탐방과 같은 읽기 자료가 중단원별로 제시되고 있다.

9단원의 ‘우리생활과 법’의 주요내용들은 제7차 교과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소단원으로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이 추가 되었다. 마지막 단원에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수단을 다루고 타인의 기본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포괄적으로 타인의 기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요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본문의 비중이 활동이나 읽기자료에 비하여 많았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활동이나 읽기자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은 금성출판사의 제7차 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구성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교과서 구성 자료 비교⁴⁾

| 분석대상 | 법단원 전체쪽수(A) | 활동 및 읽기자료에 배당된 쪽수(B) | B/A | 그림 및 사진 자료의 수 |
|--------------|-------------|-------------------------|-------|------------------|
| 제7차 교육과정 | 21 | 8.3 | 30.5% | 45개 |
| 2009 개정 교육과정 | 56 | 25.5 | 45.5% | 112개 |

<표 2>와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법교육 내용의 양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법과 인권교육의 하나의 단원에서 연관을 맺으며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하여 활동 및 읽기자료에 배당된 쪽수와 그림 및 사진 자료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활동과 읽기자료의 비중을 늘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림 및 사진 자료의 수를 늘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논의

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교육에 관한 기존의 비판적 논의는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법교육에서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첫째, 내용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과 같은 사고력 신장에 맞게 내용이 선정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우선 학생들이 자료를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읽기자료와 탐구활동의 비중은 <표 3>과 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과서의 구성방식은 토론과 자료조사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

4)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박성혁 외(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고려 신장을 위한 법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구활동이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제시 될 뿐 상반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사고의 신장을 유도하는 탐구활동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금성출판사의 10단원의 활동2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에 보장된 기본권 조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헌법 조항이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지와 헌법상의 기본권 중 자신이 누리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탐구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고의 신장을 크게 유도하지 못한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헌법상 기본권의 확인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사실일 뿐 사고의 출발점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출발점으로써 탐구활동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기본권과 관련된 상반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충돌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해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적인 사례를 제시를 통한 탐구활동은 미래엔컬처그룹(구대한교과서)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감시카메라와 인권’과 관련하여 하나가 제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의 제시가 부족하고 개인 간의 권리의 충돌이 있을 때 각 개인의 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고로 유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중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한다면 상반된 쟁점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 만 해도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사례의 제시와 관련된 문제로 사례의 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쟁점 사례’라는 표현에서 ‘쟁점’은 학습자 입장에서의 쟁점이어야 한다.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인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소재가 학습자 입장에서 쟁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제시에 있어서도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쉬운 이야기로 고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성출판사의 9단원의 활동9는 사례를 통한 법적 쟁점의 해결 방안을 소개하려는 바람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학습들의 관심 대상과는 거리가 멀 수 수 있는 아파트 조망권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사례 제시에 있어서도 ‘민사 합의부, 재건축 조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일조권, 가처분 신청’등의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습자의 사고 촉진을 위한 쟁점 사례 제시의 의도와 상관없는 법적 개념과 지식은 불필요한 것이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추상적인 기본권의 종류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적인 사례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상

반되는 쟁점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법의 적용과 사법과정, 법의 이념과 같은 법적 개념 지식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쟁점적인 사례들은 법적 개념 지식을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학습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용의 범위와 내용제시의 계열성의 문제이다. <표 2>에서 제시된 중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내용 범위는 그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10학년의 사회과목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개념들은 중학교 사회과에서만 다루게 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법과 관련된 학습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법과 관련된 지식을 너무 많이 학습하게 하여 학습자의 학습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의 추구하는 목표를 전제로 하여 법교육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내용의 계열성 문제는 10단원 구성과 관련된다. 10단원의 '인권보호와 헌법'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발달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까지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통치구조에 대한 것으로 넘어 간다. 인권보호를 위한 헌법 기관의 소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제시한 다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에서의 인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 가능성의 문제이다. 학습 가능성의 문제는 둘째에서 언급한 법과 관련된 지식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와 어려운 법적 용어 및 개념의 문제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과의 법교육을 1학년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개인차는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법교육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법적 용어와 개념의 문제이다. 더구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교과서에 진술된 용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도된 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법이란 어려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금성출판사 p.254에서 제시하는 소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신의', '남

5)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그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Scott, 1991:363-367). 내러티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Bruner, 2001:28). 이 때문에 배경 상황을 이야기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법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용'을, '생각을 키우는 블로그' 라는 읽기자료에서는 '측량, 등기, 공용 면적, 정산, 시정 명령'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법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에 의구심이 든다.

IV. 맺으며

법과 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며, 어떠한 내용요소를 갖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재검토해 보는 것은 법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는 2000년 당시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을 중심으로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법교육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사고력 신장의 바탕이 되는 탐구활동과 읽기자료, 그림·사진 자료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인권과 헌법의 유기적 연관을 통한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교육과 관련된 기존 비판적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 선정의 적정성 문제, 내용의 범위와 계열의 문제, 학습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에 대한 재성찰로부터 법교육의 내용 범위와 계열, 내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
- 김명정(2003).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시민교육연구, 35(1), pp.23-38.
- 박상준(2003).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사회과교육, 42(2), pp.211-230
- 박성혁 외(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 박성혁(2005).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37(1), pp.55-80.
- 박성혁(2006). 한·미 고등학교 법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법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38(3), pp.39-61.
- 박용조(2009).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16(2), pp13-39.
- 서태열 외(2009). 중학교 사회1(전시본). (주)금성출판사
- 이대성(2008).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 pp71-89.
- 최병모 외(2009). 중학교 사회1(전시본). (주)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
- Bruner. Jerome(2003). Making Stories.
- Scott. Kathryn P(1991). achieving social studies affective aims: values,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1분과 - [주제 2]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

발 제 자 :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에서의 인권 관련 쟁점과 과제¹⁾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인권이 갖는 사회적인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사회 교과서에서 인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비롯하여 대부분 학교급별 교과서에서 '인권'의 필요와 소중함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권'의 위치는 헌법의 기본권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새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인권'은 그 어느 교육과정 개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고,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인권친화적인 교과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논의들이 이야기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2007년에 이루어진 개정 교육과정 구성에서 '인권'은 사회과교육과정 전체에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가능'을 반영하듯이 2009년에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새롭게 수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권'을 다루는 방식은 2007년 논의와 달라졌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10학년 고 1 [사회]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달라진 [인권]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다. 다만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고 1 사회 교과서 전체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권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교육'으로 교과서가 '인권'이라는 내용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10학년 사회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다루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던지는 논의,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교과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1) 이 논문은 미완성이기 인용을 삼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개정과정에서 심의진으로 참여와 검정 10학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교육과정 개발과 개발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서술하는 과정(실제로 연구자는 고 1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포함된 단원을 집필하지는 않았고, 같은 집필진으로서 다른 집필자의 내용을 같이 토의하는 형태였다.)에서 경험한 연구자 개인의 반성적 성찰이 이 연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이 연구의 서술에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을 미리 밝혀둔다.

II. 10학년 사회 교육과정 개정에서 ‘인권’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수시개정을 강조한 탓인지, 제7차 교육과정을 뒤이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에 다른 교과와 더불어 공식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했고, 뒤이어 2009년 일부 내용이 새로 수정되어 고시되었다. 10학년 사회 교육과정 안에서 인권 내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1. 2007년 개정 10학년 사회 교육과정에서 ‘인권’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을 고려한 10학년 [사회] 교과는 쉽게 표현하면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의 내용이 10개 단원으로 구성된 통합교과이다. 10개 단원 중 앞의 5개 단원이 지리영역 해당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뒤의 5개 단원은 일반사회 영역의 주제를 다룬다. 이와 달리 이전의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10학년 사회 내용은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의 내용이 단원간 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국토와 지리정보 /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 정치생활과 국가 /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 사회변동과 미래사회]라는 10개 단원은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학문적인 요소로 분리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단원간에도 상당히 통합된 요소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었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작업 과정에서 역사 내용의 독립적인 구성과 시간 배분

이 달라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내용으로는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이 10개 영역을 반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일사팀과 지리팀이 나누어 진행하고 되었다. 일사팀의 경우 5개 단원의 구성에서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과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5개의 주제를 개발하게 한다.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이 그것이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사팀이 선정한 5개 주제는 그 단원 내에서도 그 주제에 따른 다양한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통합적인 요소를 갖추며, 단원간에도 통합적인 내용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며,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주제를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한 이면에는 '교육과정 자체는 대강화 정신을 발휘하여 주요 주제로만 제시하고, 교과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5개의 주제를 단원으로 제시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하여 5개의 주제를 선정한 의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과정 구성 정신에 비추어 '인권' 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9) 인권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개념의 등장 배경과 확대 발전과정을 탐구한다. 또한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이 존중될 때 공동체가 발전함을 인식한다.

- ① 인권의 기본 개념과 관점을 이해한다.
- ② 인권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 ③ 현대사회의 인권 문제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 ④ 생활 주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이 완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9) 인권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 현대생활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개념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확인한다. 나아가 역사전개 과정을 통해 인권이 어떻게 확대되고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을 탐구한다. 또한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이 존중될 때 공동체가 발전함을 인식한다.

인권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역사적 측면에서 인권 개념의 등장과 확대, 발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권 개념의 적용과 실현과정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이 국가 등에 의해 침해되거나, 개인 간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인권의 기본 개념과 관점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해 이해하여, 인권을 실현하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른 권리와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인권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인권을 둘러싼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개념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권리들을 구분해 내는 방식으로 인권 개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② 인권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권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후 인권이 발달,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역사의 전개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발달, 확대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서양에서의 인권발달 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며, 이것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요소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자료와 도서관 서적을 통한 역사적 정보가 학습에 활용 가능하다.

③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이 내용을 통해 인권 문제를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로부터의 인권 침해와 사회적 차원의 인권 침해, 개인 간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④ 생활 주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하여 인권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권보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학습자가 쉽게 경험하게 되는 생활영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열거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사례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는 모둠식 활동이나 역할극 등 학생중심 활동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12월 교육과정심의진에게 제시한 해설서 계획(안)²⁾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2007년 개정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는 ‘인권에 대한 의미와 역사, 일상에서 인권이 작용하는 모습에 대한 사례탐구, 실제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제시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권교육 연구자들이 지향하는 인권교육의 방식으로 ‘인권’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방식의 교육 내용 제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인지능력 중심의 인권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인권 상황 속에서 인권적 실천을 강조하는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을 동시에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박상준, 2003). 더불어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고 했던 스타키(Starky, 1991)을 비롯한 여러 학자의 주장에 적합한 인권교육이며, 결국 교과교육을 통해 ‘인권에 관한 교육’과 ‘인권을 위한 교육’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인권을 비롯한 주제별 교육과정 구성과 해설서는 사실상 2008년 말부터 비공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제교육의 강화’³⁾ 등을 이유로 하여 내용 변화를 꾀하면서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과정도 달라진다.

2) 이 해설서 부분은 실제 2007년 개정 사회 교육과정 내용을 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뮬 공개되지 않고 심의진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연구자는 기억한다.

3)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육과정의 정치학이 관여되어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한 연구진과 달리 일군의 연구진에서는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과 같은 주제 중심 사회과 내용구성을 할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 운영에서 지리영역 교사가 더 우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같은 내용 구성보다는 주제를 다루는 경우 지리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사회 교사가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담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2.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2007년 개정 내용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자리 잡았던 ‘인권’이 매우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주제로 제시된 5개의 영역인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중 ‘인권’은 ‘정의’ 주제와 연결되어 하나의 단원으로 축소되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개정 10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인권 단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과 해설서 내용이 구성되었다.

(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가)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사회 정의와 인권 보장의 관계,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역할, 기본권 제한의 법리, 기본권 침해와 법적 구제 방안,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 등을 탐구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및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권의식과 법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단원의 성격상 이론적, 추상적 논의보다는 실제적,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또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인 법이 준수되고 발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수·학습 내용

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으로서 인권 보장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이 내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을 실현하고 확대해 가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과정에서는 인권이나 정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이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도록 한다.

②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이 내용은 헌법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법인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헌법 규정이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를 제시하고, 지나치게 법 이론이나 원리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기본권은 물론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나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탐색한다.

이 내용은 기본권이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 행위나 형사상의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구제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나 권익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라는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색해 보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과정에서는 불법 행위나 범죄의 구성 요건 등에 대한 이론적 법률 지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기본권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례 탐구를 통해 기본권이나 권익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④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 및 사례를 파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권 의식과 범의식을 기른다.

이 내용은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참여 수단이 있음을 이해하고, 법 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입법청원, 국민 참여 재판, 헌법소원 심판 등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참여 수단들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분쟁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올바른 인권의식과 범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⑤ 현대 사회생활에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및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특정한 쟁점에 대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사회 정의 및 인권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해볼 것을 권장한다.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b: 38-39)

(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현대 민주 국가에서 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한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인식한다. 특히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그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권을 비롯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법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변동·발전함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

- 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으로서 인권 보장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 ②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 ③ 기본권은 물론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나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탐색한다.
- ④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 및 사례를 파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권 의식과 법의식을 기른다.
- ⑤ 현대 사회생활에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a: 32).

이렇게 구성된 2009년 개정 10학년 사회과에서 다루는 ‘인권’ 논의는 단순히 그 내용 구성 방식이 달라지고, 내용이 줄어든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권’이 ‘정의’와 연결되어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면서, ‘정의’에서 ‘사회 정의’로 변경된 주제와 연결되게 되었고, 이러한 구성은 사회과 내에서 ‘인권’을 다루고 교육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던지게 된다.

첫째는 ‘인권’과 ‘사회 정의’를 함께 연결하면서, ‘인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고, 이를 법의 역할과 연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의 개념을 매우 좁게 보고 법과의 관계로만 제한하여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로서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이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천명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000:11). 그런데 인권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해석하게 되면, 사람의 권리라는 성격으로 인권을 축소하여 이해하게 하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권의 개념을 약화시키게 된다.

둘째, '인권'을 법과 연결시켜 하나의 단원으로 함께 묶어버리면서 '인권'의 특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이봉철, 2001; 구정화 외, 2004; 구정화, 2009: 7)에서 '인권'은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개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고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을 법과 연관시켜 논의하면서 인권 개념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기본권' 논의로 제한되어 학습되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인권을 '법의 역할'과 '헌법 안에서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의 안에 가둬으로써 인권 교육에서 강조하던 '인지'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의 조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과 '인권을 위한 교육'의 조화 등을 사회과교육 내용에서 담아내기 어려워졌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 주제를 고려한 기본적인 의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⑤ 현대 사회생활에서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담겨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실천의 문제이며 일상의 사안이라는 점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III. 2009년 개정에 따른 10학년 교과서의 쟁점과 고려사항

교육과정이 국가가 정하는 교수학습 내용의 큰 틀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교과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2007년 개정 10학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009년에 교과서 심사 대상이 되는 10학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려던 여러 저자들은, 2007년 교육과정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대부분 2009년 5월 이후에 나온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고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서 교육과정에 담긴 '인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준비 없이 집필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교육과정이 늦어 주어짐에 따라, 저자들은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인권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회 정의'와 '법' 논의 안에서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으며 수많은 의문과 논쟁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짧은 기간⁴⁾

4) 해설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사 영역의 다른 5개 단원이 모두 짧은 시간에 교과서 내용을 집필해야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사회문화나 정치, 그리고 경제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인권, 사회정의, 법이 연결되어 있어서 집필자들의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교과서 서술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학교에서 10학년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수업에도 여전히 남겨지게 된 셈이다.

1. 인권과 법의 관계 문제

2009년 개정 10학년 사회과 해설서에서는 법이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 중 상당한 목록(예: 신체의 자유)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로서 내용을 정하게 하도록 하였지만, 제37조 ①항에서 포괄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법은 정말 인권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말로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 구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와, 다른 하나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쉬운 답으로는 ‘인권’의 관점에서 법을 만들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해설서에서는 다른 성취기준에서 ‘법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에 대하여,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하는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해설서에서 요구한 대로 탐구과정을 거쳐서,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법 준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이 경우에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입법 청원, 헌법소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이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서 인권의식과 법의식간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인권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법으로만 인권을 담아내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소수자의 권리 문제나 제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측면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해석이 더 심층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집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연구자는 기억한다.

2.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문제

사실 지금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은 '기본권'과 연관되어 다루어졌고(이진석, 1994), 이 논리 속에서 인권은 헌법과 연관되어 설명되어 왔다. 2007년 개정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고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인 인권 자체에 초점을 두어 교육내용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개정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드러내고, 인권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통해 인권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인권의 관계에서 강조할 것은 단순히 기본권의 목록과 그 제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전문에서부터 제130조까지 모든 조항이 일관되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이진석, 1994: 122). 또한 단순히 헌법에서 인권의 어떤 다양한 목록을 보장하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헌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러한 목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에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 해설서를 자세히 보면 기본권 보장의 원리보다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더 중요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 보장의 원리는 그 중요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 서술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기본권의 제한에 한계를 주는 것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을 약화시킨 면이 없지 않다. 결국 이는 인권이 헌법의 기본권과 단순 연결되어 논의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로 볼 수 있기에 향후 인권 논의에서 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3. 일상의 인권 사례 제시 문제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인권은 결국 법 문구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인권교육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침해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한 실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2007년 개정과 2009년 개정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는 2007년의 내용과 2009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2007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학습자가 쉽게 경험하게 되는 생활영역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지만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인권 침해 사례’라고 되어 있어서 다루는 수준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구정화(1997)는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이 외국과 달리 학습자의 발달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일상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도록 제안하는 2007년의 교육과정 제안이 인권교육에서의 강조점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두발자유화 및 학교 내 CCTV 설치 문제, 일기장 검사, 학교 폭력 문제, 야간 학원교습 등과 같이 일상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문제가 학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학생의 인권 경험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권문제는 학습에서 논외로 하고, 학교 밖의 생활이나 아직은 학생들의 경험의 장이 아닌 사회에서의 일상적 인권 침해를 내용으로 다룰 경우, 학생들이 자신을 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고려사항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비추어 향후 10학년 사회과 인권 내용이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고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지금까지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 온 인권과 헌법의 관계는 헌법 안에서 기본권을 설명하면서 기본권을 인권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인권을 위한 헌법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헌법 안에서 인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관점에서 헌법 조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약하다는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축이 되거나,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에서라도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권이 헌법과 연계되어 어떻게 교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 인권의 눈으로 법 다시 보기

일상에서 인권은 소수자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법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인권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을 보인다. 이점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것과 묘한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실제로 법으로 인권을 다 보장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사실 인권 보장의 역사는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법과 제도에 대한 투쟁의 역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인권은 주어진 목록으로 규정되고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희생에 의해 획득되어 온 것이기에(송현정, 2003) 법의 맥락으로 인권을 담아내면 지금까지 인류가 확장해온 인권의 역사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관점에서 법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3) 인권 생활 사례 구성하기

사실 인권을 수업에서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개입하고 작동하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 사건은 어떤 것이 있고, 학습자 스스로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어떻게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학생들의 생활 영역인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

들이 경험하는 인권 사태가 무엇인지에 구체적인 사례 구성이 이루어져서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2007년 및 2009년에 개정 고시된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해설서의 내용에서 인권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 변화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과 내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인권 논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실 교육과정이 교과서를 규정하고, 교과서가 교사의 수업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교실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의 관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교사의 수업 자율성은 존재한다. 이점에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교실 수업에서 교사들이 인권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교과서를 바라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으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논의로 전환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인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하고 인권교육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교과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하는데, 이 고민의 가장 핵심 자리에 사회과 교사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연구자가 제시한 문제와 의문들이 새 교육과정에 따라 10학년 사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논의로 다시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인권 침해 사례의 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밀도 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 자신도 학생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열림 마음으로 일상에서 인권 사건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10학년 인권 주제를 수업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인권의 시각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것을 교육에서 어떻게 드러낼 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a).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b).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정화·송현정·설규주(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1997). 사회과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제25집, pp.95-116.
-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pp.1-12.
- 박상준(2003). 인권교육이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5권 1호, pp. 115-141.
- 송현정(2003). 현대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이봉철(2001). 현대 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이진석(1994). 기본권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실태와 교수모형 탐색, 사회와 교육, 제18집, pp.119-140.
- Starkey, H.(ed.)(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Cassell.

1분과 - [주제 3]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쟁점과 과제

발 제 자 : 이 대 성
고양 행신고 교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쟁점과 과제

이 대 성 (고양 행신고 교사)

- I. 시작하며
- II.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변화 양상
- III. 2009 개정 교육과정 상 '법과 사회' 과목을 둘러싼 쟁점
- IV.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과 사회' 과목의 발전 과제
- V. 맺으며
- * 참고문헌

I. 시작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은 한국 법교육 역사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 이전 법교육이 정치교육에 예속되어 다루어졌고, 정치 교과서 상에서 제한된 분량을 할당받아 법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암담한 현실이었기에 제대로 된 법교육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학자나 정치교육론자들에 의해 법관련 내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작업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교육의 목소리를 담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초기 한국 법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나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제기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들의 노력과 바램의 결실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법과 사회'가 탄생하였다¹⁾. '법과 사회' 과목 탄생은 단순히 과목의 신설 차원을 뛰

1) 초기 법교육학자들로는 최인화, 허중렬, 이기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독일 등의 법교육을 소개하면서 한국 법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학계에 알리고 정치교육으로부터 법교육의 독립을 강하게 외쳤다. 이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갖고 한국교원대학에서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김범주 교수의 노력의 결실로 '법과 사회' 과목이 탄생하게 되었다.

어 넘어 한국 법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법교육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했다²⁾. 이후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법무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2005년부터 다양한 법교육 사업(생활법 경시대회,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다양한 법교육 교재 개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법교육은 1970년대 미국 법교육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많은 관련 성과물들이 교육현장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되었다³⁾.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의 값진 성과를 얻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교육 실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법과 사회’ 과목 탄생으로 한국 법교육의 정체성을 살렸다면 ‘법교육지원법’ 제정은 이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법과 사회’ 과목 탄생과 ‘법교육지원법’ 제정만으로 법교육의 발전을 결코 담보할 수만은 없다. 자칫 승리의 샴페인에 취해 머뭇거리는 사이에 또다시 법교육의 위기를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법과 사회’ 과목의 존폐 논란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최근 법교육의 위기 즉, ‘법과 사회’ 과목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몇몇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기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수능에서 ‘법과 사회’ 과목에 대한 선택 학생의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과목의 미천한 역사를 감안하면 2006학년도에 62,584명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2007학년도에 62,434명, 2008학년도에 57,009명, 2009학년도에 56,111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학생들로부터 점차 ‘법과 사회’ 과목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상의 ‘법과 사회’ 과목 선택 지정 학교 수와 선택 학생 비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 급속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향후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개편 작업 시에도 학교 현장에선 여러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최우선적으로 제외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⁴⁾. 이밖에도 고등학

2) 우리나라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보다 법교육이 발전된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의 고등학교에서 ‘Street Law’가 생활법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Law School’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립된 법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일면에서는 우리나라 법교육이 상당히 진일보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러한 성공의 기저에는 법무부 주도하에 법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설정해 준 법교육연구위원회, 실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및 적용에 노력한 법교육센터, 교사 연수와 교육현장에 교재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 준 법문화진흥센터(솔로몬파크)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4) 이러한 일련의 이상 징후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본 연구자는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교 계열별(일반계고, 외국어고)로 '법과 사회' 과목의 선택 현황을 볼 때, 일반계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고의 '법과 사회' 과목의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는 수능에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외국어고 학생들에 비해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법과 사회'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민교육차원에서 탄생된 '법과 사회'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생들의 선택과목으로만 전략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2009년부터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대 지원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이 굳이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우선 선택하고, 로스쿨 준비는 대학에 가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법과 사회'과목의 존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2009.11.26)을 보면 '법과 사회' 과목이 사라지고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속에 편재되어 예전의 정치교육 내의 법교육 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2009.7.24)'을 발표하면서 고교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론 공청회(1차: 2009.9.29, 2차: 11.16)와 사회과 토론회(1차: 2009.9.30, 2차: 11.26)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아쉽게도 일반사회 영역 과목들 중에서 '정치'와 '사회문화' 과목은 독립되어 그래도 존속하지만 '정치'와 '법과 사회'만이 통합대상으로 묶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진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도 6만여 명이나 수능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는 '법과 사회' 과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과거의 뼈아픈 법교육의 역사를 되새겨 보더라도 정치교육과 법교육이 함께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질적인 법교육 실천에도 장애 요소가 된다. 왜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경제' 독립은 가능한데,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법과 사회' 독립은 어렵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다.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법무부 주도의 다양한 법교육 사업들 역

전문성 부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선택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회과 교사 스스로가 '법과 사회' 과목을 책임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기존 '사회문화', '정치', '경제' 과목과 달리 역사가 미친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과목의 특성 상 선불리 '법과 사회' 과목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학생들의 선택 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교원양성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 임용과정에서의 시험 출제 문제, 임용 후 교사 연수 과정 문제, 법교육 관련 학문 연구 공동체의 부족 등이 있다(이대성, 2006).

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법교육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근본적으로 학문적 근거에 기초한 영역과 과목 구분보다 기계적이고 단순한 사분법적인 논리(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에 기초한 영역과 과목 구분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결국에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자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도 반하여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여파는 상당하다. 특히 정치와 통합되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법과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토대로 쟁점을 살펴보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과 사회’ 과목 탄생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법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법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9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 고시된 상황이 아니고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이기에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II.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변화 양상

1. ‘법과 사회’ 과목 탄생 배경과 의미

1)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 배경

법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보면 사회과가 처음으로 도입된 교수요목기(1946-1954)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주로 헌법 등의 공법 중심 법교육이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정치나 사회·문화 과목 내에 일부분으로 위치함으로써 제대로 된 영향력을 갖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⁵⁾.

5) 제2차 교육과정기(1964-1974)까지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법의 기초 이론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관련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5-1981)에 들어오면서, 사회과의 학습 영역에 헌법뿐만 아니라 법 기초 이론과 사법 영역 기타 생활 주변의 여러 법 영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 사회과는 ‘정치·경제’(필수), ‘사회·문화’(선택)로 나누어졌고,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정치·경제’ 과목에 헌법 이외의 법 분야에 관한 단원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법의 기초이론’, ‘개인 간의 생활에 관한 법’, ‘범죄와 형벌’,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법’, ‘국제 관계와 법’ 등의 주제가 다루어짐으로써 법교육이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2-1987) 이후 법 관련 내용 가운데 헌법교육영역과 법 기초

특히 6차 교육과정까지는 법교육 내용이 독립적인 교과로서 혹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제시되지 못하고 사회과 교육과정상 '사회' 또는 '정치' 과목의 한 단원으로 편성되어 교수-학습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사회과에서 법교육 영역이 독립적인 학습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 교육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고 극단적으로 보면 정치교육에 예속되어 제대로 된 법교육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허종렬, 1991).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법교육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동안 '정치' 과목에서 실시되는 법교육의 내용이 정치교육의 내용체계에서 좁은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구상에서 편입되어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지극히 단순화된 형태의 법학개론식 교육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김일기 외, 1997).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의 11, 12학년 단계에서 '법과 사회'라는 독립된 심화 선택 과목이 탄생하였다. 이것은 법교육이 정치교육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 배경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교육으로부터의 독립을 간절하게 요구했던 학문적 요구의 수용으로 보여진다.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가르쳐졌던 법교육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초기 법교육학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이 있어왔고 이러한 학문적 요구의 수용 결과로 '법과 사회' 과목이 탄생하였다.

둘째, 개발기관의 주체가 현장교사들의 법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곳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제7차 사회과교육과정을 개발하였던 곳이 한국교원대학교이며, 이곳은 어느 대학보다도 교과교육에 관심을 가졌었고 법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법교육 연구 성과물들이 쏟아졌고 법교육 전공 석·박사도 다량 배출하면서 한국 법교육 연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결실은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셋째,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다양한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이다.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차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할 예비 과목의 성격까지 내포하기 있기에 인기있는 법

이론 위주의 다른 법교육 영역이 다시 분리되었다. 법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은 때로는 일부가 필수과목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선택과목으로 포함되는 등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시 위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 이후 위축된 법교육이 전개되어왔다(박성혁 외, 2005: 27-28).

대를 염두해 둔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법과 사회’ 과목 신설을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법교육 강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법의식 개선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나 범죄 증가 등에 대한 우려, 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국민적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2) ‘법과 사회’ 과목 탄생을 기초로 한 한국 법교육 운동의 성과

생활법 교육을 지향하는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됨으로서 정치교육으로부터 법교육이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점을 기초로 법교육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연구 성과물들도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법무부 주도 하에 다양한 법교육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법교육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크게 법교육 학습교재의 개발과 보급,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법교육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성낙인 외, 2008: 26-28). 우선 법교육 학습교재의 개발과 보급면에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포함하여 총 11종의 맞춤형 생활법 교재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사이버 법교육센터(<http://www.lawedu.go.kr>)를 개통하여 온라인상 다양한 자료 제공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면에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을 포함하여 총 4종의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학생자치법정 운영,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운영해 나감으로써 학교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윤일중, 2008: 170-173).

결국 ‘법과 사회’ 과목의 탄생을 기초로 법교육학자나 현장교사들의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힘을 원천으로 법무부 주도하에 다양한 법교육 사업 활동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몇 가지 한계점⁶⁾을 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과 사회’ 과목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실지로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6) 이러한 한계점에는 지나친 성과 위주의 법교육 사업이 갖는 한계, 소수 참여 중심으로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법교육 사업 추진 상의 예산 부족과 조직의 연계성 문제 등이 있다(이대성, 2009).

2. '법과 사회' 과목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가. '법과 사회' 과목의 운영 실태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는 사회과 심화 선택 과목에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윤리(전통윤리+윤리와 사상)'로 총 11개 과목이 있다. 다양한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인 200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다음 <표 1>은 2004-2008년도 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을 이수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4-2008년도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이수 학생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계) | 한국 지리 | 세계 지리 | 경제 지리 | 한국 근현대사 | 세계사 | 법과 사회 |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
|-----------------------|-------------------|-----------------|-----------------|-------------------|-----------------|-----------------|------------------|------------------|-------------------|
| 2004년도 (900,129) | 215,870 (19.3) | 46,927 (4.2) | 15,120 (1.4) | 263,461 (23.5) | 77,425 (6.6) | 84,949 (7.6) | 93,072 (8.3) | 103,305 (9.2) | 218,738 (19.5) |
| 선택순위 | 3위 | 8위 | 9위 | 1위 | 7위 | 6위 | 5위 | 4위 | 2위 |
| 2005년도 (940,256) | 235,690 (20.2) | 43,282 (3.7) | 19,459 (1.7) | 281,039 (24.1) | 72,045 (6.2) | 82,416 (7.1) | 101,594 (8.7) | 104,731 (9.0) | 227,835 (19.5) |
| 선택순위 | 2위 | 8위 | 9위 | 1위 | 7위 | 6위 | 5위 | 4위 | 3위 |
| 2006년도 (979,039) | 245,122 (20.3) | 46,592 (3.9) | 26,189 (2.2) | 284,146 (23.5) | 75,337 (6.2) | 84,950 (7.0) | 105,943 (8.8) | 110,760 (9.2) | 230,252 (19.0) |
| 선택순위 | 2위 | 8위 | 9위 | 1위 | 7위 | 6위 | 5위 | 4위 | 3위 |
| 2007년도 (1,003,599) | 254,291 (20.4) | 47,670 (3.8) | 26,074 (2.1) | 304,586 (24.5) | 70,133 (5.6) | 81,693 (6.6) | 106,705 (8.6) | 112,447 (9.0) | 241,172 (19.4) |
| 선택순위 | 2위 | 8위 | 9위 | 1위 | 7위 | 6위 | 5위 | 4위 | 3위 |
| 2008년도 (1,060,554) | 269,404 (20.3) | 50,015 (3.8) | 32,070 (2.4) | 316,595 (23.9) | 75,674 (5.7) | 87,071 (6.6) | 106,855 (8.1) | 122,870 (9.3) | 263,355 (19.9) |
| 선택순위 | 2위 | 8위 | 9위 | 1위 | 7위 | 6위 | 5위 | 4위 | 3위 |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2004-2008년도)에 기초하여 구성함.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였고, '법과 사회'를 선택한 학생은 비교적 적어 교과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 과목은 탄생 초기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계열별(일반계고, 외국어고)로 '법과 사회' 과목의 선택 현황을 볼 때, '법

과 사회’ 과목의 선택비율에 고등학교 계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2004-2008학년도 자료). 특히 일반계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고의 ‘법과 사회’ 과목의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외국어고 학생들에 비해 ‘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에도 ‘법과 사회’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단위 학교의 법교육 프로그램 즉 생활법경시대회, 모의재판경시대회 등이 주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법교육 활동이 소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성적 상위층 학생들의 몫이 되어 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2〉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단위 : 명(%)

| 과목명 | 2005 학년도 | 선택 순위 | 2006 학년도 | 선택 순위 | 2007 학년도 | 선택 순위 | 2008 학년도 | 선택 순위 | 2009 학년도 | 선택 순위 |
|--------------|------------------|----------|------------------|----------|------------------|----------|-------------------|----------|------------------|----------|
| 윤리 | 179697 (14.2) | 4위 | 158584 (12.8) | 4위 | 161421 (13.2) | 4위 | 165,127 (13.4) | 4위 | 171001 (13.5) | 4위 |
| 국사 | 159052 (15.2) | 3위 | 100189 (8.1) | 6위 | 69507 (5.7) | 7위 | 57,570 (4.7) | 7위 | 58635 (4.6) | 7위 |
| 한국 지리 | 232370 (18.3) | 1위 | 211526 (17.1) | 2위 | 214499 (17.5) | 2위 | 221,773 (18) | 2위 | 220083 (17.3) | 2위 |
| 세계 지리 | 29614 (2.3) | 10위 | 33346 (2.7) | 10위 | 37917 (3.1) | 10위 | 40,047 (3.3) | 10위 | 40551 (3.2) | 10위 |
| 경제 지리 | 29671 (2.3) | 9위 | 47784 (3.9) | 9위 | 54286 (4.4) | 9위 | 52,925 (4.3) | 9위 | 54104 (4.3) | 9위 |
| 한국 근· 현대사 | 171591 (13.5) | 5위 | 172706 (14.0) | 3위 | 168414 (13.8) | 3위 | 174,834 (14.2) | 3위 | 193905 (15.3) | 3위 |
| 세계사 | - | - | 32816 (2.7) | 11위 | 33120 (2.7) | 11위 | 34,838 (2.8) | 11위 | 33549 (2.6) | 11위 |
| 법과 사회 | 54911 (4.3) | 8위 | 62584 (5.1) | 8위 | 62434 (5.1) | 8위 | 57,009 (4.6) | 8위 | 56111 (4.4) | 8위 |
| 정치 | 98856 (7.8) | 6위 | 102487 (8.3) | 5위 | 106392 (8.7) | 5위 | 108,958 (8.9) | 5위 | 113083 (8.9) | 5위 |
| 경제 | 84485 (6.7) | 7위 | 86666 (7.0) | 7위 | 88068 (7.2) | 6위 | 84,239 (6.9) | 6위 | 80559 (6.3) | 6위 |
| 사회· 문화 | 229100 (18.0) | 2위 | 225633 (18.3) | 1위 | 227422 (18.6) | 1위 | 231,950 (18.9) | 1위 | 247329 (19.5) | 1위 |
| 계 | 1,269,347 | | 1,234,321 | | 1,223,480 | | 1,229,270 | | 1,268,910 | |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채점 보도자료(2005-2009학년도)

위의 〈표 2〉는 ‘법과 사회’ 과목의 수능 선택 과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천한 과목의 역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수능 첫째 5만여 명의 학생이 응시하였고 5-6만 명의 학생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며 전체 11개 과목 중에서 8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⁷⁾.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법과 사회'과목의 수능 난이도 상향 조정 문제와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있는 현실, 로스쿨 체제로 변화되면서 법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차츰 '법과 사회'과목을 기피하고 다른 과목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해석된다.

나. '법과 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점

제7차 '법과 사회' 교육과정은 실정법의 거의 모든 법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법 교육과정이 대단히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의도를 실현하는 교과서의 개발과 현장의 법교육 실천이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달리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⁸⁾. '법과 사회' 교과서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법과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법적 지식영역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신장을 중요하게 언급하였지만, 실제 교과서는 법학개론식의 내용 요소들이나 서술방식 체계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단원 주제에 따라 발췌, 요약하여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대성, 2009). 또한 교과서가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고, 교사의 수업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교과서이어야 하는데, 현행 '법과 사회'교과서는 그렇지 못했다. 더군다나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인 법적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목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교과서 단원 체제 구성 문제, 교과서에 제시된 법적 사례의 부적절성 문제, 내용 서술 방식의 문제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박성혁 외, 2005; 이대성, 2006).

7) 상대적으로 '법과 사회' 과목보다 오랜 과목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사, 세계지리의 수능 선택 과목 비율이 낮다는 점과 함께 '법과 사회'와 동일하게 편성된 '경제 지리'에 비해서도 학생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구분에 의한 과목 편성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8) 자세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은 지면 관계상으로 생략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해성(2004), 박성혁 외(2005), 이대성(2006, 2009), 진재관 외(2006)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변화 양상: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 비교

가. 제7차 ‘법과 사회’ 교육과정 내용

제7차 교육과정상의 ‘법과 사회’ 과목은 사회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현상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법치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바람직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내용의 체계를 ‘법의 이념과 권리·의무’, ‘개인 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법 영역별 접근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영역별 구체적인 학습 주제와 주요한 학습 내용 요소는 <표 3>과 같다(교육부, 1997).

<표 3> 제7차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표

| 영역 | 주제 | 내용요소 |
|---------------|--|---|
|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의의와 구조 - 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 - 권리와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개념과 기능 - 법의 이념 - 법의 분류 -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원칙 - 법 적용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법치사회와 민주시민 - 법적 사고와 법적 문제해결력 |
| 개인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 가족관계와 법 -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권리 - 가족 간의 법률관계 - 민법의 기본원리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부동산 거래와 등기 |
| 사회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과 법 - 여성과 법 - 소비자의 권리 보호 - 근로자의 권리와 법 - 환경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생의 권리 - 여성의 권리 - 여성과 법적 쟁점 -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노동법 - 사회보장제도 - 환경문제와 법적해결 |
| 국가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의 보장 -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 범죄와 형벌 - 재판의 종류와 원칙 - 국제법과 국제 분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 - 행정 조직과 법치행정 - 행정구제제도 - 형법과 범죄예방 - 재판절차와 종류 -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

| 영역 | 주제 | 내용요소 |
|--------------|--|--|
|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문화와 법의식 - 법률구조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 -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 - 선진 외국의 법문화 - 법률구조제도 - 법의 변천과 미래사회 - 미래사회의 법적 쟁점 |

나. 2007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 내용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사회' 과목의 6학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단원으로, 7학년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 보호와 헌법' 단원으로 강화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 제시되었고, 또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법과 사회' 과목이 개선 방향에 맞추어 새롭게 바뀌었다(진재관 외, 2006). 이밖에도 법교육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헌법 교육의 내용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조직과 통치' 등은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 종전대로 다루어졌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 법치 국가의 민주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법의식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법과 사회' 과목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제 상황들을 논리적·법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엽적이고 세세한 법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각 생활영역에서 핵심적인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도록 한다(교육부, 200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의 체계를 '법 생활의 기초', '국가적 생활과 법', '개인적 생활과 법', '사회적 생활과 법', '범죄와 형사절차'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법 영역별 접근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영역별 주요한 학습 내용 요소는 앞 장의 <표 4>와 같다.

〈표 4〉 2007 개정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표

| 영역 | 내용 요소 |
|-----------|---|
| 법 생활의 기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필요성, 법제도의 구조 - 법의 연원, 법의 민주적 정당성, 법적 개념과 원리의 활용, 법의 해석과 적용 -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 법률정보의 획득과 법률구조의 활용 - 법치주의와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 준법 의무와 비판적 법의식, 법과 사회변동 |
| 국가적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헌주의와 헌법,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및 제한의 한계, 기본권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헌법 재판제도 -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작용의 법적 수단, 행정작용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보호 - 국제법의 기능, 국제관계의 주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 개인적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 채무의 보증 - 부동산의 매매, 등기, 주택의 임대차 - 불법행위의 유형, 손해배상의 부담, 새로운 불법행위 - 혼인, 이혼, 친자, 상속 - 개인 간의 분쟁과 권리의 침해, 개인 간의 분쟁의 해결과 민사소송 / 소송 이외의 방법을 통한 개인 간 분쟁의 해결 |
| 사회적 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피해의 유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 피해의 구제 - 취직과 근로계약,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구제 |
| 범죄와 형사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형태와 유형, 형벌과 보안처분 - 형사 절차의 개관, 수사, 공판, 형벌의 집행 |

다. ‘법과 사회’ 과목 내용 변화의 특징

우선 7차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상의 커다란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일부 내용 영역의 추가와 삭제가 있었다. 교육법과 환경관련법의 내용이 삭제되었고, 입헌주의와 헌법, 헌법재판제도, 행정작용의 법적 수단, 행정작용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 보호 내용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요소 삭제와 추가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특히 교육법 분야 중에서 학습권 문제는 기본권 내용에 포함시켜 지도가 가능해 보여 지지만 최근 환경권 강조에 따른 환경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환경관련 내용의 삭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다만 행정소송이나 기본권 분야에서 일부 언급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강한 사회적 요구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헌법과 행정법의 제도적 접근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과 학습 곤란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헌법과 행정법 관련 내용 요소의 증가는 문제로 보여진다.

또한 ‘범죄와 형사절차’의 독립 단위 설정과 전체적으로 형법 영역에 대한 강화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증가,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 등 사회적 요구의 적극적인 반영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생활과 법’ 영역에서 별도로 독립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법교육과정 상의 적절한 언급과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 실태를 보면 불필요한 재판 증가로 인한 행정 인력 낭비와 간단한 소송 절차와 교육의 필요성 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재판의 종류와 원칙' 단원을 최대한 살려서 민사, 형사, 행정재판과 헌법재판 등을 묶어 독립 단원으로 재구성하는 전략도 적절해 보인다(이대성, 2007). 만일 범죄와 형사절차가 강조되어야 한다면, 어떤 이론적 근거와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와 형사절차' 영역이 재판 절차의 이해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지향점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Street Law에서 '형법과 소년사법'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수용하려 했던 제고해 볼 여지가 많다.

III.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의 주요 쟁점: 법·정치 통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정치와 법' 과목의 개정 시안 내용

가. 개정 시안의 개발 과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2009.7.24)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2009.9.29, 11.16)에서 사회(역사/도덕포함) 교과군의 구체적 과목수를 현재의 13개에서 8개 과목 편제 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서는 일반사회 A, B/역사 A, B/지리 A, B/윤리 A, B로서 현 13개 과목에서 4개 영역의 5개 과목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⁹⁾.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30일에 실시된 사회과 토론회에서는 각 영역 2개 과목씩 배분하여 통합하는 안으로 정치와 경제과목을 합편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법과 사회과목을 합편한 '사회·문화·법'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9) 2009.11.16 총론 2차 공청회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편제표를 제시하면서 '국어과와 사회과의 선택과목 수와 명칭은 교과별 2차 공청회(11월 중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혀 아직 사회과 선택과목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김정호, 2009).

26일에 ‘도덕/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공청회의 의견과는 달리 워낙 이질적인 내용이라 무조건 합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합가능성이 높은 ‘정치와 법’에 주목하게 되었다. 학계의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는 학문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경제와 합편하지 말고, 법과 사회와 통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치와 법학은 민주주의 헌법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친화성이 있다는 점, 정치와 법을 통합하면 학습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정치와 법과 사회를 ‘정치와 법’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사회·문화는 이미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통합한 과목으로서 수능 시험에서 수요가 1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경제 과목 역시 현행대로 독립 과목으로 편제되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¹⁰⁾. 결국 학계는 감축을 위한 통합도 논리적 체계 하에 실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비평과 더불어 ‘정치’와 ‘법과 사회’를 통합하는 안(정치와 법), 경제는 학문 자체의 독자성과 경제교육진흥 차원에서 기존대로 두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당초 ‘정치·경제’, ‘사회·문화·법’으로 제안한 통합 방식 대신 ‘정치와 법’ 통합 정도로만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나. 개정 시안 내용

우선 새로운 과목명을 고민했다고 한다. ‘정치와 법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설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 ‘공민’, ‘민주정치와 법’, ‘정치생활과 법’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명칭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치와 법’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택하게 되었다(김정호, 2009). 또한 학습량과 수준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영역은 기존 ‘정치’나 ‘법과 사회’과목과 마찬가지로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하위 주제로 3개, 주제별 내용요소는 3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총 5개 영역, 15개 주제, 45개 내용요소들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내용요소는 차후 논의에 따라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역 설정은 원리에서 제도로, 미시에서 거시로 시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I. 민주정치의 기초’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원리

10) 이러한 근거에는 경제학은 이론 자체가 독자적이어서 다른 학문 분야와 합체하기가 어렵다는 점, 수능 선택 과목에서 학생 수요 반영, 정부의 경제교육 강화 지원 정책 반영 특히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학교 경제교육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이고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내용의 부실 문제 등을 내세웠다(2009.11.26 공청회 자료집).

와 관련성, 이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의식을 정치문화와 법문화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도록 하였고, 'Ⅱ.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에서는 정치참여의 과정을 정부, 정당, 시민참여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Ⅲ. 민주정치와 헌법'에서는 헌법이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갖는 의의를 기본권과 국가기관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하였으며 'Ⅳ. 시민생활과 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일반원칙과 민법, 형법의 기본원리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 국제사회의 정치와 법'에서는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특성과 작동방식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정치와 법'과목의 교육과정(안)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2009 개정 '정치와 법' 과목의 개정 시안 내용

| 영역 | 주제 | 내용 요소 |
|-----------------|-------------------|--|
| Ⅰ. 민주정치의 기초 |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 정치의 의미와 기능,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 |
| | 2. 민주정치의 발전과 법치주의 | -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법치주의의 유형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 |
| | 3. 민주시민의식과 정치문화 | - 정치사회화 과정, 정치문화와 법문화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과 과제 |
| Ⅱ.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 1. 정부 형태 | - 국가와 정부, 정부 형태와 종류 -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
| | 2. 정당과 선거제도 |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정당과 정당정치 -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성 |
| | 3. 시민 참여와 여론 형성 | -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 여론, 우리나라 정치참여의 현실과 과제 |
| Ⅲ. 민주정치와 헌법 | 1. 헌법의 이념과 원리 | - 헌법의 정치적 의의, 국민주권과 입헌주의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 | 2.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기본권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 |
| | 3. 국가기관의 구성 |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 Ⅳ. 시민생활과 법 | 1. 법의 종류와 재판절차 | - 법의 필요성과 종류, 법의 민주적 정당성 - 재판의 절차와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 |
| | 2. 민법의 기본원리 | - 민법의 3대 원칙과 그 수정원칙 - 계약의 의미, 불법행위 |
| | 3. 형법과 범죄 | - 형법의 의의와 기능 - 범죄와 형벌의 종류, 형사절차 |
| Ⅴ. 국제사회의 정치와 법 | 1. 국제사회의 발달 | - 국제사회의 특성과 변화, 국제사회의 협력과 갈등 -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
| | 2.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 -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국제기구의 종류와 역할 -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과제 |
| | 3. 국제분쟁과 국제법 | - 국제법의 특성과 형태, 국제법과 국가주권의 문제 - 국제분쟁의 해결방식 |

2. 개정 시안의 개발 과정과 내용 비판: ‘법·정치’ 통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 개발 절차 상의 문제점

개발 시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결여되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최종 심의를 코 앞에 둔 임박한 시점에 공청회 시기를 선택하였다. 12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최종심의회를 연다고 하는 데, 과목간의 통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공청회를 11월 25일 개최하였다. 최종심의를 목적에 두고 공청회를 이렇게 임박하여 개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소홀하였다. 공청회의 취지를 바로 살리자면 시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처럼 ‘법과 사회’를 ‘정치’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라고 하면 관련 이해당사자는 법교육 사업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법교육지원법상의 주관 행정청임)와 관련 학회(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 공법학회 등 관련 법학회), 법과 사회 담당 현장 교사들,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는 물론 관련 법조계와 학회 등 관계자, 교직단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이밖에도 공청회 진행과정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의 형식을 띤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교 도덕/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는 이 법이 정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실상 비공개에 가까운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 공청회가 개최된 지 약 1주일만인 12월 4일 위 통합안을 포함한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최종심의회가 열린다고 한다. 위 공청회의 진행과정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¹²⁾.

11) 이 내용은 주로 허종렬(2009)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문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2)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청회 공지는 공청회 개최 2주일 전까지 주제 등 관련 사실과 발표 신청 방법의 안내 등에 홈페이지 등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표 신청을 받도록 하고 발표자 선정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정 시안의 성격이 갖는 문제점

우선 법을 정치에 통합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안은 법과 정치가 통합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과거 정치 과목 속에 법의 내용이 일부 다루어진 경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런 주장은 제기 가능하나 '법과 사회' 과목 탄생의 배경 논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다시 정치 과목 속으로 법이 흡수되어 통합되라는 정치 논리는 미래교육과정이 아니 후퇴의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안은 왜 양자가 서로 통합가능성이 높은 과목인지, 시너지 효과가 큰 과목인지에 관한 납득할만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와 함께 통합된 법은 이미 법학에서 말한 법이 아니다. 정치와 법의 통합 가능성은 법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하는 관점. 즉, 법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학에서도 항상 법을 다룬다고 하는 사실이다. 법이라고 하여 항상 법학에서만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정치학의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 중에 법·제도접근법(legal-institutional approach)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학의 연구방법 혹은 성과의 일부일 뿐 법학의 그것이 아니다(허종렬, 1991).

셋째, 법과 정치의 통합은 법교육을 약화시켜 행정부와 국회, 법원 차원에서 기대되고 요청되는 법치주의 강화에 반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현 MB 정부에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가 전략으로서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사회 구축'에 배치되고 있다. 현 정부는 2008.10.7 국무회의를 열어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국정지표' 아래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축은 5대 국정지표 중 '섬기는 정부'를 위한 4대 국정전략 중 하나이다.¹³⁾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법치주의 확립이며, 법교육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목을 정치과목에 통합시킨다는 것은 그 선진화와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하는 국정지표 달성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넷째, 국회와 법무부의 법교육지원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법과 정치'의 통합은 법치주의 구현을 취지로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의 목적과 정면 상치되는 결과를 초

13) 4대 국정전략의 내용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지방분권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래할 것이다¹⁴⁾. 국가 4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법무부의 법교육사업에도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법교육 수요에도 반한다는 점이다. 2008년 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2%를 차지한 반면, 법을 생활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비가 생겼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점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헌법상 권리장전이 개선되고 헌법소원제도가 신설되며, 유신 이후 인권 의식이 점차 높아져 이에 대한 법교육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입증되고 있으며 88년부터 구속적부심, 보석, 헌법소원이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법교육을 해야 하고 법을 정치와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 수요에 반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법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법률’의 요청에도 반한다¹⁵⁾.

다. ‘법·정치’ 내용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¹⁶⁾

기존 7차와 개정7차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 5개 대단원 가운데 법과 사회 과목에서 넘어온 내용은 4단원 하나뿐으로 법의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 또한 4단원에서는 분량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법의 기본원리를 추상적 차원에서 훑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애당초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던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 원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은 법교육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정된 법교육 지원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오던 법교육의 교육제도상의 기반을 약화시켜 향후 법교육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허종렬, 2009 교육부 건의문 내용).

둘째, 통합안은 법의 기초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합수정안은 처음부터 법과 정치를 철저히 통합적 관점에서 다룰 것을 표방하며, 영역을 크게 5장으로 구분하

14) 법교육지원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국민참여 재판제도란 중요한 중범죄를 다스리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참여 의식, 법에 대한 식견 혹은 소양이 필요하다. 법과 정치의 통합은 법교육 강화를 위한 이러한 요청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6) 이 내용 역시 주로 허종렬(2009)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문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여, 1장 민주정치의 기초, 2장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3장 민주정치와 헌법, 4장 시민생활과 법, 5장 국제정치와 법으로 나누고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관점에서의 통합에 그치며, 법학 독자의 법 내용이 아님, 통합수정안 어디에도 법률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법이 정치에 통합이 됨으로써 법의 기초, 행정법, 국제법이 내용에서 배제되었고, 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법률관계, 법적 사고력, 법의식(권리와 의무의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식, 준법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 법을 제대로 다루자면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통합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독립된 장으로 다룰 만한 여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셋째, 정치와 법의 통합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질적인 대상간의 결합이며, 그렇지 않아도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법을 멀리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치, 법'의 두 과목이 한꺼번에 제시되어 학습량 부담으로 인해 선택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와 법의 통합은 법을 정치에 종속시켜, 정치적 관점에서만 법을 보게 하고 법의 외연만 주입하도록 할 뿐, 법을 법 그 자체로서 보고 그것이 내포한 법률관계를 사건과 사례를 통하여 다루도록 하는 데에는 소홀하게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부담이 심각하다. 법을 정치의 시각으로만 가르치기 쉽고 어려운 과목에 대한 부담을 느끼므로 기피 과목이 될 우려가 크다. 정치와 법을 통합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사도 정치교육 전공 교사들의 몫으로 인식하기 쉽다. 교대와 사대에서 법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배출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정치과목에 익숙한 교사들 역시 법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정치교육적 관점에서 법교육에 치중할 것이 예상되며, 자연히 법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법교육의 목적 달성도 어렵다.

다섯째, 교육 내용의 문제로서 법의 외연만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의 개념, 종류와 내용만을 열거하고 암기하게 함으로써 법의식(인권의식과 준법의식)을 심어주는 데 실패할 것이다. 또한 법 학습에 대한 부담만 초래하여 학생들로 법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2009 개정 ‘정치와 법’ 과목 개정 시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가. 심화 선택 과목의 축소 논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고 부여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심화선택의 경우 너무 많은 심화 선택 과목으로 인해 학습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다¹⁷⁾. 사회과학 선택과목수를 처음부터 몇 개로 한정하고 통합을 하자고 접근은 제 사회과학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접근이다. 심화선택과목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선택과목 또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어도 사회과학 제영역의 학문적 특성상 독자적 정체성이 인정되는 영역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 현재 개설된 13개 선택과목 중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등과 같은 과목은 학문영역임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통합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바탕 학문적 성격이 전혀 다른 법, 경제, 정치, 사회문화, 윤리를 다른 것들과 통합하자고 발상은 전혀 선택중심교육과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학은 학문적 특성상 위의 사회탐구 영역 중 어느 영역과도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것이다. 다른 과목들은 철학 혹은 행동과학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데 비하여 법학은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의 축소가 사회과학 제 영역의 학문적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통합수정안은 경제에 치우친 편파적 논거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도 역사중심과 경제중심적인 접근에 의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개편된 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통합수정안은 학계의 의견이라 하여 주로 정치와 경제 통합안을 반대하는 경제학계의 의견만 활용하고 있기에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합 대상인 법학과 정치학계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기에 본질적인 접근방법상의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다.

17)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연구 책임자인 홍후조 교수에 따르면 학생 진로 적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선택과목 수를 계열이나 영역별로 더 많이 개설하고 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컬하다. 또한 선택과목 축소가 사교육비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며 학습자에게 어떻게 부담을 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법과 사회'는 생활법중심인가, 법학교육중심인가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을 둘러싸고 법교육과 법학교육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하다. 법적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력 함양과 교양증진 및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법교육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진로 탐색은 법학교육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2007 개정 법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법과 사회' 과목의 두 가지 성격 즉, 교양 증진과 실생활의 이해라는 법교육 측면과 대학 법학 수업의 예비단계로서 법학 체계에 따른 교육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두 가지 접근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심화된 법학적 내용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진재관 외, 2006). 어찌보면 쉽게 동의할 수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우선 실제 7차 '법과 사회' 과목에서도 생활법을 지향하였고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 영역에서 시도하려는 일부 흔적이 보인다. 다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영역은 법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법 중심보다는 혼합형적인 형태를 취해 왔다. 2007 개정 법교육과정도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수준에서 생활법 중심의 내용 구성 원칙에 함몰되어 있지만 제7차 법교육과정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통합과정안에서도 보면 법교육과 법학교육이라는 성격이 어색한 동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009 개정 법교육과정에서도 굳이 생활법으로 모든 영역을 구성하려고 접근보다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혼합형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 '법과 사회'는 헌법중심인가, 생활법중심인가

법교육이 헌법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생활법중심으로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기존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법과 헌법중심 접근 보다는 생활법 중심의 접근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했다. 7차 교육과정 이전에 정치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법교육이 자생하며 왜곡된 모습을 보였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헌법을 중심으로 정치와 법을 통합하는 접근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며 실질적인 법교육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통합과정안을 보더라도 '시민생활과 법' 단원이 설정되어 있

기는 하지만 생활법이라기보다는 방대한 양을 포괄하여 축소해 놓음으로써 법적인 느낌만을 갖는 생생내기용의 측면이 강하며 일정 정도는 ‘민주정치와 헌법’ 단원에 비중을 두면서 정치와 법의 통합적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교육을 지나치게 헌법 중심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정치와 법의 통합적 접근의 명분만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법교육에 요구되는 다양한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교육을 통치구조나 법제도적 접근에 치중하기보다는 권리 보장 중심 접근에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라. 법교육과 정치교육은 통합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과정안은 법과 정치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물론 법은 법학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학에서도 법을 취급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법을 정치과정의 산물(output)로 보며, 법 자체보다 그것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제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법을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어 왔고, 제7차에 ‘법과 사회’과목이 탄생하면서 법학에 바탕을 둔 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학과 법학은 근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실증과학, 행동과학인데 반하여, 법학은 규범과학에 해당하며, 정치학은 정치현상으로서의 법에 대한 행동과학적 사고, 실증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법학은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법을 정치와 통합하는 경우 제6차 교육과정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며, 이처럼 학문의 성격상 서로 이질적인 정치와 법을 통합하려는 것 분명 문제가 있다.

법교육은 정치학에서 바탕을 두고 법제도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에 바탕을 두고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법 관련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다루는 것이다. 법교육은 정치교육과 그 목적과 내용, 바탕학문, 방법 면에서 전혀 다르며 이질적인 것이다. 또한 법학에서 갖추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사고력(legal mind)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법학 고유의 교수법에 의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허종렬, 2009).

또한 법과 정치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우선 법과 정치 통합적 운영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법학 영역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과목 기피 현상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선택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학습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 선택과목 선정에서도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과 수능 부담이 다소 많은 '법과 정치'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어진 단위 시간 내에 많은 학습 양을 지도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수업의 과행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경제와 사회문화의 경우는 6단위로 하고 '법과 정치'과목은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므로 8단위로 조정함으로써 단위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다.

마. 법교육을 정규 '법과 사회'과목만으로 가능한가?

그동안 한국 법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법과 사회'과목에 모든 집중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과 사회'과목의 폐지 논란이 있거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근본적인 법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법교육은 '법과 사회'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창의적 재량활동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나 기타 관련 과목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교양선택의 지정을 통해서도 병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교양선택으로 있는 '생활 경제'를 들 수 있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해 줌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여건과 의지만 된다면 언제든지 법교육 실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정도서로 개발된 '어린이와 법이야기, 생활 속의 법이야기, 법 함께 만들어 가기'라는 법교육교과서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또한 법무부 주도하여 단위학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생활법 경시대회,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경연대회, 법교육출장강연회, 법고를 학당 및 각종 캠프 등은 정규 교과 과목에 의한 접근보다는 학교생활 속에서 법을 접하고 친해질 수 있는 새로운 장이다. 따라서 정규 과목인 '법과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비정규 과목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법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IV.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법과 사회' 과목의 발전 과제

1. '법과 사회'과목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왜 우리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법과 사회'과목을 꼭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

금까지 우리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법의식 개선,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저연령화, 선진 법치국가 실현, 준법 의식 부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신장 등 다소 막연하면서 당위적인 수준에서 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정당성 논리를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과 사회’과목의 위기를 접하면서 다시금 ‘법과 사회’과목을 가르쳐야만 정당화 논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논리는 법교육론자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현장 교사들, 학생들, 교육과정 입안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청소년 법의식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나감으로써 ‘법과 사회’과목의 내적 정당화 논리로 삼고,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외적 정당화 논리로 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고등학교 사회탐구과목의 선택 논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매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러한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학문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분 논리와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구분논리 간의 대립 구도로 전력을 소모할 것인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논리가 자신의 진로 적성을 발견하고 고등학교때부터는 이러한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선택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리라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과목 메뉴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법과 사회’의 경우에도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법의 영역을 세분화시켜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심화과목 선택논리 역시 학생 선택권 존중에 기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생 선택 현황과 반응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에 과목군을 조정해 나가는 모종의 합의도 필요하다.

2. ‘법과 사회’과목의 새로운 인상 정립: 내용 정선화, 교과서, 활동/관심, 수능

무엇보다도 ‘법과 사회’과목의 존립 당위성을 논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상부터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법과 사회’과목 하면 어렵게 느끼고 법대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배우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배운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생활법 중심과 쉬운 법 편안한 생활이라는 입장으로 변화시키는 모종의 새로운 인상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내용의 정선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담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모든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호응받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교과서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한 교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고 자기주도적이고 정보화

매체 연결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단위학교 법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법교육 동아리활동을 꾸려서 생활법경시대회나 모의재판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각종 법무부 주관 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 역시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끝으로 수능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선택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선택과목을 기피하고 다른 과목으로 시선을 돌리고 만다. 실제 '법과 사회'과목의 수능 선택 과목수 감소의 원인도 어느 정도는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의미 있고 쉽게 접근하면서도 수능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3. 비정규 과목중심적인 접근 가능성 탐색

'법과 사회'과목이라는 정규 과목을 통한 법교육 접근은 현장 과급성과 효과성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지나치게 경사될 필요는 없다. 매년 정규 과목의 선택과목 축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규 과목과 함께 비교과중심적인 접근에 대한 진지하고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생활 경제'라는 교양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됨으로써 일상생활의 경제활동과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교양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듯이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양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법과 사회'과목과는 다소 차별화된 접근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양과 전공 과목의 내용 수준과 차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미국의 'street law'에 착안하여 한국형 street law과목 형태로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창의적 재량활동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 이외에 다양한 법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개발되고 있는 인정도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법교육 접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법과대학, 로스쿨과의 연계성 검토

법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선 법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은 중요한 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법과대학이나 로스쿨과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는 법교

육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법과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입학 허가 조건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법과 사회'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명시해준다면 지금보다 '법과 사회'과목의 선택 열기는 높을 것이다. 아직도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고 상당수 대학생들 역시 로스쿨 도전을 한번쯤은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과 관련된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수시 면접이나 집단 토론에서 '법과 사회'과목에 제시된 지문이나 주제를 선택해주는 센스나 각종 고등학교 법교육 활동 참여 실적이 포트폴리오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학교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을 가르쳤고 우수한 학생을 보내려고 노력해 나갔다면 이제는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선발하려고 움직여야 하며 매력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법과 사회'과목의 활로 개척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로스쿨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로스쿨에 생활법 강좌를 개설하여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법과 사회'과목에 대한 멘토링과 학습 보조 교사 활동 등을 해나간다면 학교 현장의 법교육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현장 교사들과 관련 학회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과 신진 연구 인력 양성

금번 법과 정치 통합 논쟁의 중심에 현장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관심 밖이었다는 점은 매우 서글프다. 철저하게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관계자,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논쟁의 주체로서 등장했을 뿐 현장 교사와 관련 학회들의 참여와 영향력은 미약할 정도를 넘어서서 불구경 수준이었다. 물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측면과 함께 급박하게 전개되는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 파악면에서 다소 유리하였기에 일면 타당한 면도 엿보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법과 사회'과목 축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현장 교사들이며 그중에서 '법과 사회'과목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관련 학회 역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목소리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법교육을 전공하는 후학들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기에 향후 발전적인 법교육 연구 노력에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아무래도 법교육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선 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후학들의 연구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에서는 법교육 직무 연수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해외 연수나 연구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우수한 법교육 신진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어야 한다.

V. 맺으며

최근 '법과 사회'과목의 위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고 무엇보다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법과 사회'과목의 존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더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급기야 '법과 사회'과목이 정치에 통합되는 편제안이 발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2009.11.26)에서 나타난 '정치와 법'이라는 통합적 과목은 과거의 뼈아픈 정치교육 내의 법교육 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통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공청회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선택과목의 축소 논리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도 희박한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법교육학자로서 더욱 가슴 아프다. 선택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논리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논리는 일맥상통함에도 강제적으로 학생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발상 자체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미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6만여 명이나 수능에 선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법과 사회' 과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발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을 과목 이기주의로 폄하할 사안도 아닐 것이다. 실로 '법과 사회' 과목 탄생 이후 한국 법교육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며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법무부 주도의 다양한 법교육 사업들 역시 좌초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법과 사회'과목은 존치되어야 마땅하다. 아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기초한 학교 선택권 보장에 있기에 범영역이 직업군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 기계적이고 단순한 사분법적인 논리(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에 기초한 영역과 과목 구분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토대로 쟁점을 살펴보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2009 개정 통합교육과정안을 토대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크게 심화 선택

과목의 축소 논리면에서 학문영역에 근거한 과목 선택 논리로 갈 것인가, 기계적인 과목 구분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문제이다. 당연히 전자의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교육당국에선 후자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과목과 영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쟁점인 과연 ‘법과 사회’가 생활법 중심으로 갈 것인가, 법학교육중심으로 갈 것인가의 논쟁이다. 교육과정 논리 상으로는 생활법 중심이지만 실제로 보면 혼합적인 성격이 짙다. 또한 헌법 중심과 생활법 중심 간에도 혼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나친 헌법 중심 접근은 정치와 법의 통합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법교육을 정규 ‘법과 사회’과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비정규과목이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을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에 문제를 극복하고 ‘법과 사회’과목의 발전을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우선 ‘법과 사회’과목에 대한 과목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외적 논리나 당위적 수준의 목표 설정에 그치지 말고 내적 논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학생 법의식 조사 등을 통해 탄탄한 실증 자료를 확보해 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법과 사회’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어렵다는 인상을 개선해야 한다. 꼭 필요한 내용만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담아내야 하고, 교과서는 학생 중심에서 쉽고 재미있게 만들 어져야 하며 다양한 법교육 활동에 학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수능 시험은 재미있는 사례를 쉽게 출제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규 ‘법과 사회’과목 이외에 비정규 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시도와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형 ‘street law’ 교재를 개발하여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다양한 학교 단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의 법교육 인정 도서 개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법과 사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대학과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학입시와 연계하여 ‘법과 사회’과목을 필수 이수제로 운영 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학교 현장과 호흡할 수 있는 생활법 강좌 운영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과 관련 학회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하며 장기

적인 법교육 발전 차원에서 신진 법교육 연구 인력을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과 사회’ 과목 탄생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법교육의 현실은 오히려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법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9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 고시된 상황이 아니지만 일정 정도 법교육의 축소는 예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 전쟁이었다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백병전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시 현장 교사들의 뒤통으로 남겨진 현실이 서글프지만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법교육을 실천해 나간다면 다시금 학생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참고문헌]

- 김범주 외(2009).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 김일기 외(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 김정호(2009). 2009 고교 도덕/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7). 2007 개정 사회과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안 공청회 자료.(2009.07.24)
- _____ (2009). 미래형 교육과정 사회과 토론회 자료.(1차: 2009.09.30, 2차: 11.26)
- 김해성(2004). 사회과 법교육 내용으로서의 법전통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6(2), 51-68.
- 박성혁 외(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 성낙인 외(2008). 법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법교육학회.
- 이대성(2006).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창간호, 71-90.
- _____ (2007). 2007 개정 법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과교육연구」, 14(4), 47-69.
- _____ (2009).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6(3), 63-75.
- 윤일중(2008).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3(1), 한국법교육학회.
- 조우영(2005). 학교 '법과 사회' 과목 내용 구성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2(2), 181-204.
- 진재관 외(2006).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종렬(1991). 한국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정립 시론. 「사회과교육」, 24, 119-130.
- _____ (2009). 초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자료집. 한국법문화진흥센터.
- _____ (2009). 교육과학기술부 건의문 자료.
- Arbetman, L. P. & O'Brien, E. L.(2004). Street Law: A Course in Practical Law (7th eds). National Textbook Company.
- 江口勇治 編(2003). 世界の法教育. 現代人文社.

2분과 - [주제 1]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발 제 자 : 김 상 돈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김 상 돈 (서울 상원초 교사)

- I. 들어가며
- II.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 III.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과 실제
- IV. 맺으며
- * 참고문헌

I. 들어가며

세계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공동의 교육 목표는 인류가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으로 여러 민족, 문화가 함께 어울려 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각 나라마다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지구촌화 현상은 타문화에 대한 독특성과 서로 다름(difference)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존중(honor), 더 나아가 선용(creative utilization)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백경선, 2006), 이에 대비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의 국제화, 세계화 사회의 시대를 지나 2000년대에 내부 국제화 시대인 다문화 사회의 시대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문화 정책이 국가 정책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지역 교육청과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배려한 교육이나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도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교육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이나 그 자녀의 학교 적응 교육으로만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다문화교육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겪어야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다문화교육¹⁾이다.

최근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에 대치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제이해교육의 일부분로서 ‘다문화 이해’ 영역으로만 다문화교육을 생각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의 외연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미애(2004)는 세계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및 병행 개념체계를 제시하면서, 세계교육이 내용으로 삼는 세계이해와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에 다민족교육을 포함시켜 다문화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배워야 할 필요성은 일상의 문제이자 미래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의 문제로 다가왔다. 다문화 사회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정문, 2006). 다민족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도 일반 학생들의 이해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 새터민, 연변 이주 한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지해온 문화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맞게 되는 문화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준비나 태도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편향적인 고정 관념과 이중적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임성택(2003)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의식의 원인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찾고 있는데,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부지불식간에 타민족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차별화하는 교육을 해왔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냉전 체제 하의 이데올로기 교육은 서구 유럽 및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와 고정 관념을 형성해 온 반면, 제3세계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었으며 이러한 편견과 고정 관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1) Banks는 다문화교육을 학생교육에서 주요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운동이라고 정의하였고, Grant는 다문화교육을 자유, 정의, 평등, 공평, 인간 존중의 철학적 사고에 기초한 개념이고 교육과정이라고 하였으며, Nieto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과 종합적인 학교 개혁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 부모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거부감, 오해, 편견을 가지게 하고 일반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집단 따돌림까지 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주류 다수 집단인 학생 및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교육과 비주류 소수 집단인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론적 탐색을 근거로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법으로써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학교 교육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의 현실적 어려움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다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II.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1.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요구로써 다문화교육

가. 사회 통합의 과제와 새로운 시민성의 필요성

새로운 이주자와 기존의 시민들, 사회적 소수와 사회적 다수 집단이 공존하면서 겪는 갈등은 네 가지의 상충되는 이해들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시민들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관습,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고 적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이주자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거들떠보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여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은 한 사람의 의식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권리 집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새로운 이주자들 역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자신들의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한 개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도 소수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사회적 소수로서 새로운 이주자들은 본질적으로 갈등하는 이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자신들이 완전한 사

회적 인정을 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갈등하는 두 집단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요구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내면의 가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 상호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 -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김남국, 2005).

다문화 사회는 너무나 다른 가치와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때론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사회이다. 다양한 개별 문화들이 보존되고 장려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개별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과 상상력을 넓혀가는 사회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다문화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에게 다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과업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 담론들이 신자유주의, 한미 FTA 등으로 국가의 탈중심화 경향에 조용해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분열적이되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민족주의에 구속되어 있는 탓에 이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의 기제로 전환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과 편견, 경계와 구분을 강조하고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자극하며 민족정기나 민족자존심이라는 추상적 구호 아래 배타적 민족주의에 머물도록 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재일 한국인들을 통한 차별과 억압 경험의 역사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분단 상황에서 작동하는 ‘분단 민족주의’²⁾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양영자, 2007). 다문화가 공론화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법적 자격에 관계없이 ‘순혈과 혼혈’, ‘우리와 (낮은 서열의) 이방인’ 사이에 작동하는 배타적인 위계의 위력은 동일하다. 소수 문화 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제도적 배려의 인식함은 그들을 재서열화하고 재인종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오경석, 2007).

2) 박명규(2000)에 의하면 분단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을 지닌 이데올로기로서 남북한은 물론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활용한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하였고, 정지웅(2004)은 분단시대 민족주의는 남북 모두, 분단국가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분단시대 나름의 ‘국가주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가는 한국에서는 차별과 억압의 근원인 ‘폐쇄적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분단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성찰적 민족주의’³⁾로의 성숙이 이루어져 ‘국가적 다문화주의’⁴⁾와의 정교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Banks가 말한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목표이자 민주사회의 교육의 근본목표인 다양성과 단일성의 ‘정교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주자와 한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에는 성찰적 민족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도나 법을 시대나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차별을 타파하고 모두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문화적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인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구조도 서서히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틀의 변화에 적응하고 공공정책에 의해 다듬어질 수 있게 된다. 정치적·법률적 면에서의 형식적 평등과, 의식·인식구조 면에서의 실제적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성찰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다문화 관련 개념의 혼란

한국 사회에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격렬하게 일어났다. 2000년대에는 세계화와 더불어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로 특징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들과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논의만큼 여전히 많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현실이다(전숙자 외, 1998). 왜냐하면, 세계화와 비슷한 개념의 용어들인 국제이해, 국제화, 다문화 등등의 용어가 국가나 시대에 따라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회과학의 각 분과 학문마다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세계화와 관련된 혹은 비슷한 개념, 의미, 시사점, 대응 방향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기 보다는 점점 개념과 의미 등의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명확한 규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한 혼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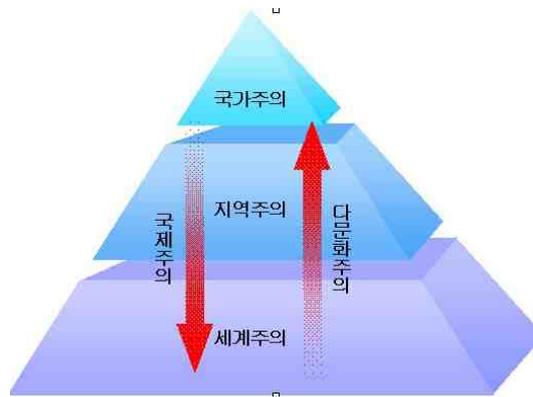
3) 양영자(2007)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과 성취를 인정하되, 경계와 구분을 완화하며, 민족성을 중심에 두면서도 민족주의를 지배하는 규율이 민족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를 지향해 가는 것을 ‘성찰적 민족주의’라고 하였다.

4) 양영자(2007)는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국가의 경계를 인정하는 국가적 다문화주의와 국가의 경계가 무의미한 다원주의적 성격의 초국가적 다문화주의로 나누고 있다. 국가적 다문화주의는 ‘가까운 이방인들’과의 연대에 포인트가 맞추어진다.

김경자 외(1997)는 각국의 교육자들이 세계화와 관련된 개념의 변천과 문헌에 나타난 의미 수용의 형태를 종합해 국가주의(Nationalism), 지역주의(Regionalism),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세계주의(Globalism)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화에 따라 노동력의 국제 이동에 따른 인구의 이동으로 나타난 현상인 민족 관계의 다양화의 현실을 반영한 다문화주의를 포함시켜, 새롭게 세계화 및 다문화 관련 개념들을 재정리하여 국가주의, 국제주의, 지역주의, 세계주의, 다문화주의의 5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의는 nation에 기반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nation⁵⁾은 민족적 혹은 민권적 단일성을 상징하는 국가인데 비해 state는 정부와 제도인 정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정치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동일한 집단(nation)이 배타적 정치단위인 국가(state)를 소유한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따라서 Nationalism은 민족적 국민주의(nationalisme ethnique)와 민권적 국민주의(nationalisme civique)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지역주의는 인접한 국가 간 연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최근 EU와 ASEAN등의 활동과 더불어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국제주의는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이익 증진과 평화 정착하려는 개념이다. 넷째, 세계주의는 ‘cosmopolitanism’과 ‘globalism’의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 전자는 국가에 특유한 가치라든가 편견(偏見) 등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상 또는 하나의 세계국가를 적극적 원리로 하는 사상인 반면, 후자는 세계를 하나의 인간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 경제적 복지, 사회적 정의, 환경과의 조화 등의 실현을 꾀하려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는 초국가적이고 전지구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계주의(globalism)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에 따라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자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타문화와의 융합을 통한 문화의 발전 뿐 아니라 민족과 인종 차별적 요소를 극복해 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1990년대 ethnic적 차이에서 기인한 유고 내전, 체첸과 러시아의 갈등 등의 민족 분열적 상황과 정반대의 민족 통합적 시도이다(유정석, 2003).

5) 조정남(2002)은 “민족(nation)은 공통의 생활양식을 가진 자생적 단위이며, 구성원이 그 범위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구분할 수 있는 추상적 통일체”라고 정의한다. 민족(nation)이 근대 민족국가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 ethnic, ethnicity는 종족, 인종, 민족성, 민족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ethnic)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ethnic은 서로 간에 최소한의 주기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는 다른 문화적으로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양상으로 타자와의 접촉 상황에서의 자신들만의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Hylland Ericksen, 1993)

이상과 같은 세계화 관련 개념들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관계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화는 국가적 수준(national level)에서는 국가주의, 지역적 수준(regional level)에서는 지역주의, 세계적 수준(global level)에서는 세계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가 국가적 수준에서 지역,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세계화의 양상을 국제주의라 하며, 세계화가 지역,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과정에 나타나는 세계화의 양상을 다문화주의라고 한다(김상돈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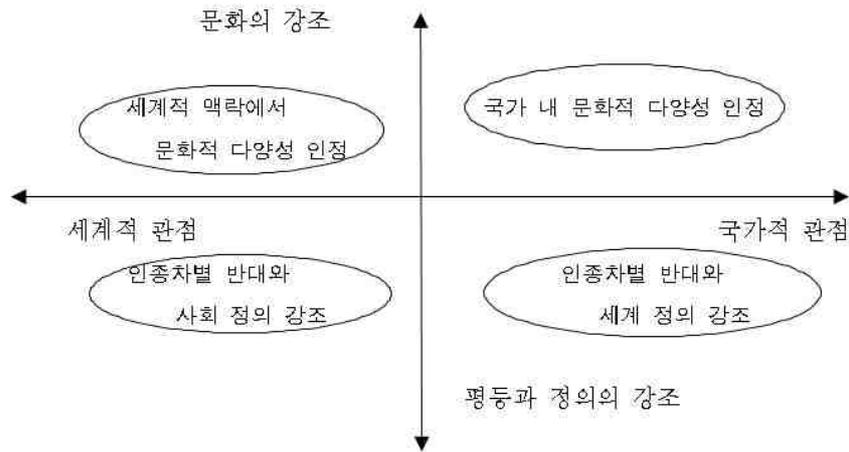
[그림 11-1] 다문화 관련 개념의 관계

다.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유형

다문화교육은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학교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교육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과 사회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개념으로, 개인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집단과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집단이 공존하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 뿐 아니라 상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인 것이다.

2008년 내한하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Sleeter는 다문화교육의 개념 모형으로 x축에는 세계적 관점 vs 국가적 관점, y축에는 문화 vs 평등과 정의의 기준을 각기 설정하여 (1) 국가적 문화 (2) 국제적 문화 (3) 반인종 및 사회정의 (4) 반인종 글로벌 정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가정과 실제 활동 및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에서 양영자·황규호는 다문화 교육 내용에 관한 쟁점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로

(1) 자발적 참여 (2) 자발적 배제 (3) 비자발적 참여 (4) 비자발적 배제 의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2] 다문화 관련 개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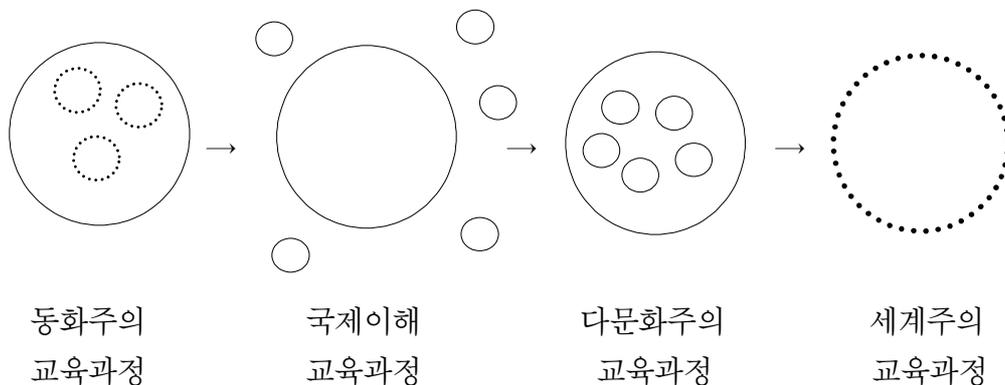
다문화교육 및 교육과정 접근 모형과 유형의 다양함을 지적하고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이원희(2008b)는 Banks(2007, 2008)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 모형”을 근간으로 그의 학문적 관심사의 변화를 따라 다음 <표 II-1>와 같이 다문화 교육과정 접근 모형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II-1>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

| 구분 | 단일성 | 다양성 |
|-------|--------------|----------------|
| 자기 중심 | i 동화주의 교육과정 | ii 국제이해 교육과정 |
| 타자 중심 | iv 세계주의 교육과정 | iii 다문화주의 교육과정 |

동화주의 교육과정은 다수자의 관점에서 펼쳐는 교육과정이다. 소수민족을 위한 별다른 내용 구성보다는 방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주류 문화에 빨리 진입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된다. 주류 문화 속에 소수민족을 합치시켜 가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국제이해교육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또는 논의 방식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현덕, 2003). 그러나 <표 II-1>에서의 국제이해 교육과정은 자신이나 자국의 입장에서 소수민족 또는 다른 나라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필요시 소수문화와 관련된 내용과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운영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은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자신이나 자국의 처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족의 문화도 동등하게 가치롭다는 것이다. 즉, 주류 문화이건 소수문화이건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측면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글로벌 또는 세계주의 교육과정은 지구촌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며, 자기와 타인의 구분을 떠나 원융한 삶을 사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단 하나뿐이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모두 커다란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이다. 즉, 자타의 구별이 없이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문화 교육과정의 유형과 변화 과정을 [그림 II-3]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3] 다문화교육과정의 유형과 변화과정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상황과 교육과정 현실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세계화와 세계주의 정책의 영향이 세계주의 교육이 먼저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다문화 사회에 도래하고 다문화주의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주의 교육은 다소 이상적인 교육과정 유형이고 1990년대에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잠시 소개되고 논의가 되었을 뿐 국제이해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주의 교육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다문화교육이 부재하여 나타난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 강 건너 불이 아닌, 발

등에 떨어진 불처럼 급박한 현실이 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때 국제 이해교육과 세계주의 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2. 기존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가. 교육 대상과 주체의 측면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 이주자들이 꾸준한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 이주자들의 학령기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교육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비주류 소수집단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교육 활동에 치우쳐 있어, 주류 다수집단인 대한민국 성인과 아동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와 자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그다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단체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도 학교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 다문화교육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공조 체제 속에서 그 주체,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위해서는 다문화적 시민성에 따라 국내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분류와 이해가 급선무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다문화교육이 교육 대상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내외 거주하는 사회구성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축에 따라 [그림 II-4]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주류 다수 집단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본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여러 경로에 의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주류 소수집단인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 나누어지며, 교육 내용과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표 II-2〉 참조).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 가정 성인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 | | 高(有) Global Citizenship | | | | | |
|------------------|------------|-------------------------|-------------------|-----------------------|----------------------|-------------------------------|--|
| | | | | 국내NGO단체 국제구호 단체 | 일부 국제기구 근무한국인 | | |
| | | IV | 일부 귀화 외국인 | | I | | |
| 화교 외국인 노동자 | | | 일부 유학생과 학부모 | 다문화 가정 자녀 | | | |
| 低(無) | | | 연변 조선족 노동자 | | 대한민국 주류본토인, 자녀 | 高(有) Korean Citizenship | |
| | | III | | | II | | |
| | 무정부 주의자 | | | 새터민 | | 보수 극우파 | |
| | | | | | | 低(無) | |

[그림 II-4] 다문화적 시민성에 따른 대한민국 국내외 사회구성원의 분류

<표 II-2> 다문화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방법과 내용

| 집단 | 출신 | 대상 | 교육방법 | 교육 내용 |
|---------------------|----------------------------|----|-----------------|--|
| 주류 다수 집단 | 대한민국 본토인 | 성인 | 다문화 이해 교육 |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 학생 | |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비주 류 소수 집단 | 새터민, 귀국 한인 | 성인 |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 | 이질성 극복, 한국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 학생 |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 이질성 극복, 한국문화, 학력보충,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OECD 국가 출신 귀화 이민자 | 성인 | 다문화 가정 지원교육 | 한국문화, 한국어 능력,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 학생 |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 한국문화, 한국어 능력,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제3세계 국가 출신 결혼이민 자 | 성인 |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 | 한국문화, 한국어 능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 학생 |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 한국문화, 한글, 학력보충,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제3세계 국가 출신 노동자 | 성인 | 다문화 가정 지원 교육 | 한국문화, 한국어 능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 | | 학생 |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 한국문화, 한글, 학력보충,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상호의존,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

나. 다문화 교육과정 영역의 측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처하는 데 급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대응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적 단일성과 다양성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목적 상의 갈등, 한국어·한국문화이해·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수자 대상 교육내용의 편협성과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 내용의 축소·과장·생략 등, 이주민들의 적응 수준과 형편을 고려한 분리교육이냐 통합교육이냐에 대한 성찰이 없는 교육방법 등으로 다문화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3〉 우리나라 다문화교육과정의 영역과 문제점

| 다문화교육과정의 영역 | 문제점 |
|-------------|--|
| 교육목적 및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적응교육의 목적인 문화적 단일성과 다수자 이해교육의 목적인 문화적 다양성 간의 충돌 * 교육과정 이념에 대한 치밀한 검토 부족 |
| 교육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적응 교육 및 소수자 정체성 문제에 집중 - 동화주의적 성격 * 소수자 간의 인간관계 개선 내용이나 프로그램 부재 * 교육 내용에 대한 협의나 성찰 부족 * 다수자의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내용의 생략, 축소, 과장 * 국제이해교육 내용의 무분별한 차용과 혼돈 |
| 교육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나 방과후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수준의 분리교육 중심 * 협력학급, 협력학교 없는 분리교육의 한계 * 목표와 내용 등의 교육과정 부재로 인한 방법의 무분별한 차용과 혼돈 * 일부 교과에 삽입하여 지도하는 부가적 방법의 일반화 |
| 교육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평가 부재 |

* 양영자(2007)의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현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

III.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실제

1. 다문화교육과 법과 인권교육의 관계

가. 필요성과 성격 측면

다문화교육, 법교육, 인권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공포에 따른 국가인권위원

회 설치, 2008년 2월 26일 ‘법교육지원법’, 같은 해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도 이 3개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3개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입 시기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교육이 가지는 자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 법교육은 법학교육으로 오인되도록 하여 대다수 민주시민들이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생긴 무관심,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하에 법적 공권력에 의한 인권 투쟁 억압의 역사에서 비롯된 인권교육에 대한 불신, 다문화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한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적응교육이라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 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준(2009)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상호 공생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차원적 법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지식의 기억과 이해력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과 민족의 기본권 존중, 다문화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생의 태도,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시민의 자질이 요구된다. 김철홍(2009)은 다문화교육이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인권교육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교육의 주요 흐름과 맥락이 인권교육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문화구성원들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권한을 강화하며, 이들의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주민과 기존 거주민 간의 자연스런 소통을 통한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과 법교육의 지향점이 인권교육이어야 한다.

나. 목표 측면

Sleeter(1988)는 1980년대 문헌을 통해 조사된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1) 문화의 다양성과 그 가치의 강조, (2) 타인의 인권 존중, (3) 다양한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의 인정, (4) 사회정의와 모든 인간의 평등한 기회의 확대, (5) 집단 간 권력 배분 구성의 조화로 제시하고 있다.

허종렬 외(2008)은 법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지식 목표 : 규칙과 법의 필요성 인식, 법의 기초 개념과 법적 지식 이해 증진,

법체계와 법 절차에 대한 인식,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 (2) 기능 목표 : 법적 갈등 상황 분석, 법적 사고력 배양, 법적 절차에 필요한 참여 능력 신장, (3) 가치 태도 목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식, 법적 권위 존중,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법체계 개선을 위한 참여 태도 형성.

구정화 외(2004)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4)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세 학자들이 주장한 각 교육의 목표들을 살펴보면,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인간과 집단, 문화에 대한 이해, 인권 존중, 참여를 통한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현 등의 가치가 공통적인 목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용 측면

연구자는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내용 요소를 정리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6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각 내용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목표에는 지식, 기능 및 실천, 가치 및 태도 등이 들어있다.

〈표 III-1〉 다문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행동 목표

| 내용 요소 | 행동 목표 |
|--------|---|
|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특징 알기 *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 기르기 *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
|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 증진하기 |
| 반편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문제 상황에 대처 능력 기르기 |
| 정체성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개념 기르기 *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
| 평등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지기 *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
|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 * 다양성 존중하는 마음 갖기 |

구정화 외(2004)는 학교급별 인권교육 계열화를 통해 인권교육 내용의 범주를 5가지로 나누고 있다(〈표Ⅲ-2〉 참조).

〈표Ⅲ-2〉인권교육 내용요소

| 내용 요소 | 내 용 |
|---------------|---|
|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 *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식 * 인권보호에 대한 태도 * 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 태도 |
|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 * 자유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 * 사회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 * 연대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 |
|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 | * 인권의 역사 *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총론적 논의 |
|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 | * 인권문제의 분석 * 인권침해 사례들 |
| 인권친화적 현실참여 | * 인권과 현실참여 * 인권친화적 현실참여 |

문용린 외(2003)은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에서 인권교육 내용 영역을 (1) 법과 법제도, (2) 태도와 가치, (3) 개념과 지식, (4) 비판적 사고, (5) 현실 참여 의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인권교육 전문가들도 법과 법제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 인식하고 있다(허종렬, 2009에서 재인용).

박상준(2009)은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법 교육과정을 통해 법교육의 내용 영역을 지식, 기능 및 실천, 가치 및 태도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식 영역 :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 해결, 법문화, (2) 기능 및 실천 영역 :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실천, (3) 가치 및 태도 영역 : 법적 가치, 법 관련 태도.

다문화교육, 법교육, 인권교육의 내용요소와 세부주제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의식,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능력과 방법,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 등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의 현실과 교육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인권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문화구성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차별, 편견, 법적 분쟁과 갈등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법과 인권교육을 통해 기르게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전기(轉機)가 필요한 때이다.

〈표 III-3〉 법교육 내용영역 및 세부 주제

| 내용 영역 | 내용요소 | 내 용 |
|---------|--------|---|
| 지식 | 법의 이념 |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 법의 의미와 역할, 법의 이념, 법 이념의 갈등 |
| | 법치주의 | 법치주의 개념, 법치주의 역사, 법치주의 실현 방식 등 |
| | 인권 | 인권의 개념, 세계화와 인권의 중요성, 외국 근로자와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
| | 기본권 |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의 실현 방법, 기본권 침해의 구제방법 등 |
| | 분쟁해결 | 법적 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권리와 의무 |
| | 법문화 | 우리 법문화의 변천과정, 법의식 조사결과 |
| | 주요자료 | 헌법, 민법, 세계인권선언서, 관련 판례, 각종 법률서식 견본 등 |
| 기능 및 실천 | 인지적 능력 |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능력,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 적용 능력, 법과 관련된 정보의 비판적 평가능력,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능력 |
| | 의사소통능력 |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하기,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법적 문제와 관련해 타인 설득하기, 법적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하기 |
| | 사회적 실천 | 타인과 법적 문제 해결하기, 법 집행과정의 체험,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참여, 인권 관련 시민단체 견학 |
| 가치 및 태도 | 법적 가치 | 자유, 평등, 정의, 인권, 관용, 법치주의 등 |
| | 법관련 태도 |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자발적인 준법 태도, 법률 생활에의 능동적 참여 태도 등 |

라. 법과 인권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편견과 차별의 메카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철홍, 2009). 하지만 기존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 문화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와 의무, 평등과 정의 등 법 및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미약하게 이뤄지거나 혹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는 단순히 이주민들과 그 아이들을 동화시켜야 할 수동적인 교육 대상자로서만 간주하고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무지, 편견, 차별, 불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법과 인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법과 인권교육은 이제 초기 단계 수준으로 이들의 제도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법교육은 필수 요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 이주민과

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게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함께 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구성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법과 인권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나달숙 외, 2009). 이 연구는 주류 다수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즉,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형태가 주로 분리교육 중심의 한국문화교육과 적응교육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법, 인권, 문화교육이 융합된 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2.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앞서 지적한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교육, 법과 인권교육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가. 교육 대상과 발달 단계 고려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수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놀이 등의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문화, 연령, 언어에 구애되지 않는 활동들을 통해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친근감과 법적 소양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평등과 정의, 인간 존엄과 가치 등의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였다.

나. 수요자 요구 중심

초등학생은 호기심이 강하여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호기심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흥미와 관심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법 관련 활동과 고급 식문화 예절 활동 등을 통해 미래의 직업 세계와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에티켓을 접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도 다수 주류 가정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고급문화에 접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려우므로 교육복지 측면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 통합교육 중심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 글로벌 시민성을 가진 다문화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교육과 법과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교육 속에 법과 인권교육적 요소가, 법교육 속에 인권교육과 문화적인 요소가 삽입되기도 하며, 인권교육 속에 법교육과 문화교육적인 내용이 융합되기도 한다. 법 체계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타인과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인권 침해를 탐구하고 해결할 수 방법을 법에서 찾는 선순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활동으로 이뤄진다.

3.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가.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될 다문화 가정 및 일반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법과 인권, 문화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실시하여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은 법적 소양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영역을 크게 인권교육 프로그램, 법교육 프로그램,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각 프로그램 영역이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 안에 다른 프로그램 영역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통합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III-1〉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
| 인권교육 프로그램 | ○ 법법법, 법이 필요해요! | 법의 유래와 역사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헌법교육 및 어린이와 관련된 법 체계를 통해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
| | ○ 도와줘요! 나를 지키고 싶어요 |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적 갈등상황(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 소비자 권리)에 접하였을 때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모의법을 상담 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
| | ○ 흥겨운 놀이 한마당 | 두더쥐 게임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법과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놀이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전통놀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세계음식 보드게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음식 문화를 통해 문화가 서로 교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
| 인권교육 프로그램 | ○ 흥겨운 놀이 한마당 | 두더쥐 게임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법과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놀이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전통놀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세계음식 보드게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음식 문화를 통해 문화가 서로 교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 | ○ 내 권리가 헌법 안에 다 있어요?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차이, 피부색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음을 알도록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 법교육 프로그램 | ○ 다문화 어린이 법정 | 재판의 필요성과 재판의 과정, 재판 관련 종사자의 역할을 다문화 어린이 법정을 통해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 | ○ 법 수호 지구 특공대 |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법 관련 직업 의상을 입고 그 역할을 이해한다. |
| | ○ 세계 대통령을 내 손으로 |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애니메이션 시청을 통해 지구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세계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의선거 체험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유권자의 권리와 법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
| | ○ 나도 국회의원이라구요! | 모의 활동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률 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의원들과 의장을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 문화교육 프로그램 | ○ 다함께, 댄스 댄스 댄스 | 나라마다 독특한 생활양식인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음악과 춤, 인사법을 통해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며 지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 | ○ 세계는 하나 | 세계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도시를 도미노로 쌓아서 연결해 보고 세계지도 문양 T셔츠 만들기를 한다. |
| | ○ 요리보고 세계보고 | 여러 나라의 공통되는 음식을 통해 문화적 보편성을 익히고 음식문화도 나라와 역사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
| | ○ 우아하게 먹어요 | 동양과 서양의 식습관 예절과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익혀 평소 식사할 때 지키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식사법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한다. |

나.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의 구성 방식

다문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문화와 법질서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유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초등학생들이 단기간에 법과 인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하였고 다문화 초등학생을 고려하여 연령, 언어, 문화가 다양할 것을 고려하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여 거부감을 없애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필요성 / 활동목표 / 활동개요 / 유의사항], [활동과정], [진행절차: 도입-전개-정리], [강사용 지도 및 참고자료], [연수자용 활동자료]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활동목표 / 활동개요]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점과 강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활동 준비와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2) [활동과정]

강사가 프로그램의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활동의 흐름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진행절차]

도입-전개-정리로 활동이 진행되는 실제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4) [강사용 지도 및 참고자료]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보조 자료와 강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활동자료의 일부로 쓰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활동자료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일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흥미유발의 효과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강사는 영상이나 비디오, ppt, 컴퓨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전반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최대한 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여 보다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이트나 주소 등을 제시하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연수자용 활동자료]

초등학생이 프로그램 활동에서 활용하는 활동지로 만든 것이다. 연수 진행 강사는 다문화가족별로 활동지를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이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체험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활동의 예 1> 도와줘요! 나를 지키고 싶어요!

주요내용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적 갈등상황(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 소비자 권리)에 접하였을 때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모의법률 상담 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활동목표

1. 법적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2. 모의 법률 상담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친숙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3.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활동개요

- 참가대상 및 인원 : 30명
- 소요시간 : 60분
- 장소 : 대강당
- 준비물 : 포스트 잇, 전지, 색연필, 유성매직세트

활동과정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적 갈등상황과 피해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러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10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법적, 문화적 갈등 상황 인형극 역할놀이 · 학교폭력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탐색하도록 한다. ·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예방법과 대처법을 학습한다. · 법적, 문화적 갈등 상황 인형극 역할놀이를 대본을 보고 시연한다. | 70분 |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2 : 인권나무 만들기 · 자신이 겪은 법적 문화적 갈등 사례를 생각하여 메모지에 적는다. · 메모지를 인권나무에 붙인다. ◎ 활동 3: 모의 법률 상담하기 · 자기가 실제로 겪은 사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에 느낀 점을 학습지에 적게 한다. · 법률전문가는 학생들에게 상담 사례를 상담 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알려주어 서로 공유하게 한다. ◎ 심화활동 :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동영상 보면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들을 알아보고,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스스로 찾게 한다. | 70분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법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 10분 |

진행절차

도입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적 갈등상황, 즉 쉽게 말해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 소비자로서 피해 등을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한 법률 상담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 ◎ 활동 1 : 법적, 문화적 갈등 상황 인형극 역할놀이 후 인권나무 만들기
 - 학교 폭력, 인터넷에서의 권리 침해, 소비자로서의 피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그 대처법 등과 관련 비디오를 시청한 후 자기가 입은 사례를 쪽지에 적어봅니다.
 - (피해 사례와 관련된 대본을 배부하고 인형 역할극을 해 보게 한다.)

- ◎ 활동 2 : 인권나무 만들기
 - 자신이 겪은 법적 문화적 갈등 사례를 생각하여 메모지에 적는다.

- (메모지를 인권나무에 붙인다.)

◎ 활동 3 : 모의 법률 상담하기

- 자기가 실제로 겪은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1명씩 법률 혹은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학교 폭력,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피해 등을 상담 전문가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 (상담 후에 마음의 변화 등을 학습지에 적게 한다.)

- 이제는 법률전문가 선생님이 여러분과 상담한 사례를 상담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알려주어 서로 공유하면서 대처법을 익히도록 합시다.

◎ 심화활동 :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

- 우리가 법적인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들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기관들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동영상 시청하기)

정리

오늘은 우리가 법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린이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 나가는 씩씩하고 당당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용 지도자료 및 참고자료

<활동1>

▶ 학교 폭력 동영상 참고 사이트

<http://video.naver.com/2008071016261668548>

<http://video.naver.com/2007091417191795280>

<http://video.naver.com/2008070913184765453>

<http://video.naver.com/20080>

<http://video.naver.com/200807101626166854871016261668548>

<http://video.naver.com/2008071016261668548>

▶ 학교 폭력 관련 PPT 자료(파일첨부)



▶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예방 동영상 참고 사이트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23849

<http://www.pandora.tv/my.nocuttv/31368502>

<http://video.mgoon.com/447344>

▶ 사이버 폭력 예방 안내서(PDF 파일 첨부)

Contents

| | |
|----------------------------------|---------------------|
| | I. 사이버폭력이란? 3 |
| 1. 사이버폭력 개념 및 유형 4 | |
| 2. 사이버폭력 실태 5 | |
| 3. 사이버폭력 특징 9 | |
| II. 사이버폭력 사례 11 | |
| 1. 사이버 명예훼손 12 | |
| 2. 언어폭력 등 모욕 24 | |
| 3. 사이버 스토킹 30 | |
| 4. 사이버 성폭력 36 | |
| 5. 사이버 음란 44 | |
| 6. 심의 결정례 및 판례 48 | |
| III. 사이버폭력 대응 및 예방 53 | |
| 1.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응책 54 | |
| 2. 사이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되지 않기 58 | |
| IV.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가 제언 65 | |
| [부록] 관련 법률 67 | |

출처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청예단 원격 연수원 커뮤니티-지식나눔터)

▶ 학교 폭력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이 그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록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하 생략)

〈활동2〉

▶ 인권나무 예시 그림



〈심화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 동영상

<http://www.klac.or.kr/vod/list.do?code=124>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 동영상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6_3.jsp?flag=VIEW&SEQ_ID=484

▶ 헌법재판소 홍보 동영상(헌법재판소 소개-사이버 견학-미리 보는 헌법 재판소)

<http://www.ccourt.go.kr/>

연수자용 활동자료

▶ 학교폭력 관련 인형극 대본

제목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원작)

<등장인물>

선생1 : 5학년 담임 선생님

선생2 : 6학년 담임 선생님

엄석대 : 반장

한병태 : 서울에서 전학온 아이

이희도 : 고아원 아이

김영기 : 약간 저능아

윤병조 : 평균 아이

엄영숙 : 왕패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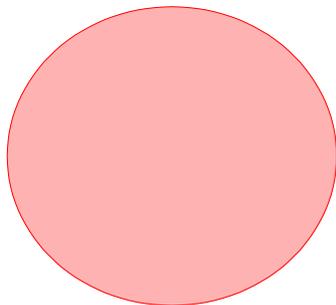
김윤희 : 4학년때 서울에서 전학온 아이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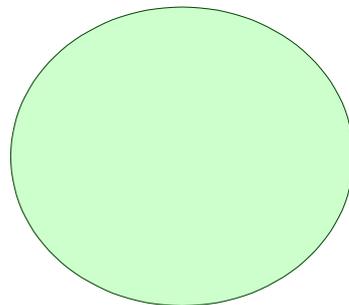
▶ 모의상담 후 학습지

※ 모의 법률 상담을 받기 전과 후의 마음의 상태와 기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상담 받기 전의 마음 상태와 기분>



<상담 받은 후의 마음 상태와 기분>



〈프로그램 활동의 예 2〉 우아하게 먹어요

주요내용

동양과 서양의 식습관 예절과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익혀 평소 식사할 때 지키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식사법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한다.

활동목표

1.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양한 식사법과 예절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2. 식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즐겁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다.

활동개요

- 참가대상 및 인원 : 30명
- 소요시간 : 120분
- 장소 : 강당이나 운동장
- 준비물 : PPT자료, 음식 재료, 조리 세트, 상, 테이블, 수저세트 등

활동과정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 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양한 식사 예절이 있음을 안다. · 식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함을 알도록 한다. | 10분 |
| 전개 [실행 하기] | ◎ 활동 1 : 한국의 식습관 예절 배우기(모형) ·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하고 밥, 국, 음식 등을 직접 차려보도록 한다. · 식사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먹도록 한다. - 웃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웃어른이 수저를 든 다음에 먹는다. - 상대방보다 빨리 먹거나 늦게 먹지 않도록 한다. ·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인사를 하고, 먹은 그릇을 잘 치우도록 한다. ◎ 활동 2 : 서양의 대표적인 식습관 예절 배우기(실제) · 식사 전에 냅킨,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법을 배운다. · 식사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먹도록 지도한다. 즐거운 대화를 하도록 한다. · 수프, 음료수, 스테이크(또는 생선 요리), 빵과 버터, 샐러드, 디저트 등을 먹는 방법을 배워 차분한 가운데서 식사하도록 지도한다. | 100분 |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2 : 서양의 대표적인 식습관 예절 배우기(실제) · 식사 전에 냅킨,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법을 배운다. · 식사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먹도록 지도한다. 즐거운 대화를 하도록 한다. · 수프, 음료수, 스테이크(또는 생선 요리), 빵과 버터, 샐러드, 디저트 등을 먹는 방법을 배워 차분한 가운데서 식사하도록 지도한다. ◎ 심화활동 : 다함께 정리를 · 동양과 서양의 식습관 예절을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실천하도록 한다. · 음식은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고, 사용한 식기는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둔다(또는 설거지를 한다). · 모둠별로 상 또는 테이블을 원래대로 잘 정리한다. | 100분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일상생활로 돌아가 실제 식사를 할 때 배운 것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도록 한다. ·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한다. | 10분 |

진행절차

(생략)

강사용 지도 자료 및 참고자료



첨부 : 테이블 매너 관련 PPT(CD 내 파일)

▶ 식사법과 예절

[한식예절]

1. 상차림 예절

기본 음식인 밥그릇은 먹는 사람의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는다.

손가락은 국그릇 오른쪽에 놓으며, 젓가락은 손가락 오른쪽에 둔다.

국물이 있는 음식은 먹는 사람 가까이 놓고, 국물이 없는 음식은 멀리 둘 수 있다.

기본 조미료인 간장, 고추장은 식탁의 중앙이나 먹는 사람 가까이 놓는다.

(이하 생략)

▶ 음식모형 구매 사이트 - 유니코 음식모형(www.unico-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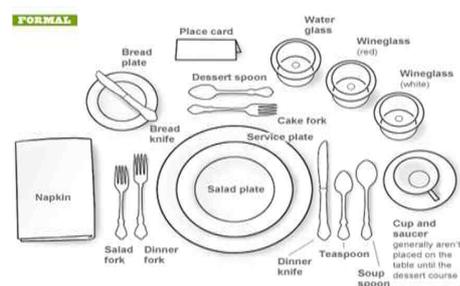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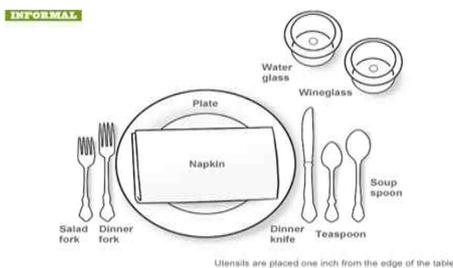
연수자용 활동자료

〈한식 상차림과 추석 상차림〉

아래 그림을 보고 전통 상차림 배치에 따라 음식 모형들을 밥상 위에 놓으세요.



〈양식 식기 배열표〉



IV. 맺으며

모든 인간은 민족, 인종, 나라, 성, 집단에 의해 차별과 편견을 당하지 않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기본권, 인권과 문화를 존중받고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과 준비로써 다문화교육과 법과 인권교육의 지향점은 동일하다. 한국인들이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힌 국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글로벌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 성숙한 글로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미래의 세계 시민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이 가지는 ‘동화주의’와 ‘국제이해교육’ 관점의 한계와 혼란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다문화교육 과정의 개발을 원하는 요구도 절실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청과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방법으로써 문화, 법과 인권교육을 사용하였다. 교육 대상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수요자 요구와 통합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영역을 인권교육, 법교육, 문화교육으로 나누었다.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 법과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생들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다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다듬어져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재와 자료 개발 등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권혜정(2009a),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행동의 개선 과정,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권혜정(2009b), 초등학교 헌법교육 교재 개발의 방향,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추계 학술 발표회 발표문.
- 나달숙, 허종렬, 박상준, 이대성, 김윤나, 김상돈(2009), “다문화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법률구조공단 용역과제 중간보고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 김상돈, 이승미, 홍후조(2009).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 교육과정연구. 27(3).
- 김아리(2007), 음식을 바꾼 문화 세계를 바꾼 음식, 아이세움.
- 김영옥, 서현, 박형신, 정상녀, 윤경선, 박미자, 이나영(2008),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 학지사.
- 김철홍(2009),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관련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춘계 학술 발표회 발표문.
- 박상준(2009), “다문화 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2(2).
-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법교육팀(2006), 모의재판·청소년법정, 법무부.
-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법교육팀(2006), 나는야 법짱!, 법무부.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2007), 맛있는 국제이해교육-다문화 시대의 음식과 세계화, 일조각.
- 유홍옥, 강대옥, 김은정(2009),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양서원.
- 양영자(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종렬, 박용조, 박형근, 이지혜(2008), 함께하는 법 이야기, 법무부.
- 허종렬(2009),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2(1).

2분과 - [주제 2]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발 제 자 : 박 상 준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박 상 준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1. 한국사회와 단일문화주의

우리 사회는 삼국시대에는 지역별로 언어와 풍습 등 문화가 공존했었다. 그러나 통일국가가 형성되면서 사회 통합과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통일된 국가적 정체성과 단일민족, 단일 문화가 강조되었다.

‘단일문화주의’는 단일민족 또는 국민에 기초하여 형성된 동질적인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라고 믿고, 그런 문화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관점은 한 민족의 문화를 획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류 사회에 동화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온다(박상준, 2008: 34-35).

예를 들면 단일문화주의적 관점에서 E.D. Hirsch는 「문화적 교양(cultural literacy)」이란 책을 통해 모든 미국인은 미국사회의 토대가 되는 공통의 문화유산-백인 남성 중심의 유럽문화와 전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공교육은 단일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졌다. 공교육은 백인 개신교 앵글로 색슨 민족(WASP)에 기초하여 그들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Koetzsch, 1997: 89-90, 135-137).

이러한 단일민족주의와 단일문화주의가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고유한 언어-즉 방언-와 풍습은 주변문화로 치부되었고, 지배계층의 문화가 중심 문화-표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단일 민족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하면 살아왔다는 단일문화주의가 강요되어 왔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국가와 지배계층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단일문화주의가 강요되면서, 지배계층의 문화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 차별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단일문화주의 풍토로 인하여,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의 문화, 서울이 아닌 지방의 문화는 주변문화로 배척되고 차별받았다. 피지배계층이나 지방의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일문화주의 전통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 소외와 차별을 겪으며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에 따라 소수자는 단일문화주의 전통에서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버리고 지배 문화에 동화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단일문화주의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통해 소수자의 인간존엄성과 문화권이라는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단일문화주의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체성과 문화를 차별하고 말살시키는 인권 유린을 초래할 수 있다.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단일문화주의를 고수해왔고, 여전히 그런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단일민족, 단일문화, 부계 혈통에 따른 국적 부여 등으로 특징 지워졌던 우리 사회의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흔들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는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기초하여 유지되었던 사회체제와 전통문화에 혼란을 가져오는 탈전통화 현상을 발생시킨다(Beck, 2000).

이처럼 많은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인종과 민족 및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다문화사회로 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가적 요구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결혼 이민자 및 자녀가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어 교육, 한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결혼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에의 적응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 관점에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및 그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박상준, 2009: 121-122). 한 핏줄,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로 요약되는 단일민족의 신화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33-34,46,65).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는데,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다문화교육은 아직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는 신화를 주입하고 한 민족문화에의 동화-즉, 한국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한 핏줄, 한 민족, 한 문화-를 고수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또한 2008년 7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박상준, 2008: 33).

이런 이유에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와 다른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나 국가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융합되어 발전되고, 현재 사회에 맞게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 관점은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기초한 동질정보보다는 여러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박상준, 2008: 34-35).

이런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은 모든 인종과 민족의 젊은이들이 성공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J.A. Banks는 다문화교육을 학생이 어떤 계급, 인종, 문화의 배경을 가지든지 평등한 학습기회를 갖도록 교육제도를 재구성하려는 교육개혁운동으로 이해하였다(Banks, 1994: 10). 비슷한 맥락에서 S. Nieto는 소수 인종이나 민족이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여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학교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oetzsch, 1997: 91-93).

3. 다문화사회의 인권 교육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 불평등, 외국인 혐오, 종교 분쟁, 문화적 충돌 등의 사회문제는 모두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서는 인권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박상준, 2003a: 117-118).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친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인권 문제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계획된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Unesco, 1978: 16-17).

인권교육은 인권의 의미와 역사,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을 인권교육의 주요 임무라고 보았다. 세계 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헌법 등에 규정된 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 원리들을 반영하는 문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아동들은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Unesco, 1978: 16,48).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 및 그들의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목표, 내용, 방법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박상준, 2009: 128-131, 인용).

(1) 인권교육의 목표

기존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주로 소수 집단 및 사회적 약자가 다수 집단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로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서 다루는 소수 집단과 약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장애인, 실업자, 노숙자, 노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주민은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은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과 다수 집단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교육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인권친화적 태도, 이주민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육성을 인권교육의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인권교육의 내용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 몇 천 년 동안 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 동일한 언어, 문화, 전통을 유지하는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르쳐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 한 민족이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는 ‘단일민족의 신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단일민족의 신화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단일민족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결국 우리와 다른 민족, 인종, 집단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과 그들의 문화가 상호 공존하고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가. 반편견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백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친절하게 대하고 동경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는 백인이 더 지적으로 똑똑하고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 사람들-주로 피부색이 검고 왜소한 모습-에 대해서는 지적이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발전되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 민족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 사람-을 확대하거나,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편견과 배타성은 정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후진국의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백인 및 그 자녀도 다문화가족이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다문화교육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선진국인 서구 백인과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사람을 피부색과 빈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편견 교육은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반편견 교육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나. 문화권과 집단권의 교육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의 문화권과 집단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나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주해 왔지만, 이주민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 종교, 관습 등 고유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며 살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인권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동화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존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인권교육은 각 대륙의 문화를 균등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의 출신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몽골 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 공존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태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다문화사회의 법교육

우리와 다른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목표, 내용, 방법이 법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법적 시민성이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법적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이다.

이런 법적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 법교육은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고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 및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태도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법교육은 단지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의거하여 법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법적 문제해결능력과 법 준수의 태도를 육성해야 한다(박상준, 2003b: 215-216).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상준, 2009: 131-135, 인용).

(1) 법교육의 목표

기존의 법교육은 주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법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점증하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권리 침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법교육의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법교육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주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지닌 기본권,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에서의 권리와 의무, 권리 침해의 구제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법교육은 이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반 국민과 이주민의 법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은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 이주민의 권리 침해 문제의 해결,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 국제결혼 또는 귀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다른 피부색, 언어, 문화 등으로 인해 차별받기 쉽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 보다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 이해시킴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법교육에서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는 기존의 단일민족국가와는 달리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집단 사이의 법적 분쟁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과의 계약, 국제 거래, 국제결혼 등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임금·승진, 이주민의 자녀 교육 등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다문화사회의 법적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법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의 개발

그러면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이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민족,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적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으로 배우는 우리나라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에 맞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다문화가족들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이해한다.
2. 다문화가족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3. 다문화가족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1. 다문화가족들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이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도록 한다. 2. '법으로 배우는 우리나라' 의 활동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소개한다. | 5분 |
| 전개 [실행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우리 헌법의 제정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6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준다. •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와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준다. ◎ 활동 2 :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활동지에 자유롭게 기록한다. 예)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을 맘대로 갈 수 있다. •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한다. ◎ 활동 3 : 카드게임으로 헌법상 기본 질서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법조항과 그에 적합한 실제 사례가 적힌 카드를 가족별로 제공한다. • 각 가족들은 실제 사례 카드와 그에 맞는 헌법 조항 카드를 찾아 서로 연결한다. • 강사는 사례 카드를 차례대로 제시하면서 그에 적합한 헌법 조항 카드가 무엇인지 발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발표하게 한다. | 45분 |
|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들이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도록 한다. • 추가적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우리나라 국민임을 인식시킨다. | 10분 |

라. 프로그램의 참고자료

- (1) 활동지 :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와 관련하여 기록한 후 발표하게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근거는 무엇인가?

|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와 관련된 이유(근거)는 무엇인가? |
|---|--|
| 예)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맘대로 살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119조) |
|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제1조) |
|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뽑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제1조) |
| 우리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 |
| 우리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 |
|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 제34조, 제119조) |
|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 제34조, 제119조) |
|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환경보호운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 제35조) |
| 우리는 상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24조) |
|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도 보장된다. |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 제5조) |
|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7조) |

(2)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법조항과 그에 적합한 실제 사례가 적힌 카드를 제공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한 후, 실제 생활과 관련시켜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쉽게 설명해준다.

▶ 활동카드 : 실제 생활의 사례

-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뽑을 수 있다.
- 우리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 우리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
-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 우리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환경보호운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는 상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다.
-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은 2년이 지난 후에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기본질서

-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상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헌법 제6조
② 외국인인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적법 제6조 2항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다문화 모의법정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이 실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주요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모의 법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법률문제를 이해시킴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다문화가족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2.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1. 다문화가족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이해하게 함으로써, 가정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모의 법정'의 활동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소개한다. | 5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모의 재판 준비하기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과정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국민참여재판의 경우)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 각 가족에서 모의재판에 참여할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을 고르게 선정한다.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한다. • 역할 맡은 사람들에게 모의재판의 대본을 나눠주고 준비하게 한다. ◎ 활동 2 : 모의 재판 실연하기 •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위치하고, 대본에 따라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방청객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 ◎ 활동 3 : 다문화가정의 법률문제 이해하기 • 모의재판의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사건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과 법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 강사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이해시킴으로써 법적 분쟁의 예방과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문제들 가정 폭력,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자녀 학대 및 방임, 다문화가정의 이혼과 자녀 양육권 문제 등 | 50분 |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정리 | ◎ 활동내용 정리 • 다문화가족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 다문화가족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족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5분 |

라. 프로그램의 참고자료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에서 참고할 법률은 다음과 같다.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56조
- * 경찰의 응급조치제도
- * 검사의 가정법원 송치 제도
- * 법원의 보호처분 제도
- *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3) 비디오로 배우는 생활 법률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률과 법률제도가 어렵고 일반국민이 이용하기에 까다롭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과 제도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법률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법률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기른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1.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생활법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 그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족들이 협의하여 답안을 제시하고 법률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소개한다. | 10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생활법률 관련 비디오 시청하기 • 다문화 가족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준다. * 비디오 : 공단 자체 제작 또는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 중에서 관련 내용의 편집 ◎ 활동 2 : 생활 법률 이해하기 • 비디오를 본 후에 다문화가족들이 관련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여 나름대로 결론을 정하여 정답지에 기록하여 발표한다. • 법률전문가가 해당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준다. | 100분 |
| 심화 [심화하기] -추가활동 [대처용] | ◎ 활동 4 : 누가 누가 잘 했나? • 생활법률 문제를 푼 후에 가장 많이 정답을 맞춘 가족에게 시상한다. | 5분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생활법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5분 |

라. 프로그램의 참고자료

<비디오로 배우는 생활법률>에서 연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줄 법률생활과 관련된 비디오의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

1. 아버지가 12살된 아들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아들이 술을 사오지 않는다고 손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버지의 행위는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2. 농촌 총각 □□□와 베트남 처녀 ○○○는 2007년 국제결혼하였다. 1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농사가 어려움에 처했고, 부인 ○○○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두 부부는 이혼하기로

- 했다. 이혼할 경우에 베트남 처녀 ○○○의 국적은 어떻게 되고 자녀의 양육과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민법, 국적법)
3.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는 필리핀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부색이 검고 한국말이 서투르다.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이 ○○○를 놀리고 집단 따돌림시켜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놀리고 집단 따돌림 시키는 학생들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닐까? (민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4. ○○○는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병원에서 8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 경우는 ○○○는 병원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에 요구할 수 있을까? (학교안전공제회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14조, 제34~44조)
 5. 베트남 처녀 ○○○는 한국에 시집가면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고 어려운 고향 집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중간 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한국 농촌 총각에게 시집왔다. 그런데 결혼해서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국 주민등록증도 받지 못했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일일 쉽지 않았다. 농사일로 얻는 소득이 턱턱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집을 도와주기도 어려웠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 베트남 신부 ○○○는 언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국적법 제6조-간이 귀화의 요건)
 6. 이란에서 온 근로자 ○○○씨는 안산의 가구 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공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장이 수 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다. ○○○씨는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말했는데, 사장은 오히려 자꾸 그러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씨는 월급을 못 받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되었다. ○○○씨는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근로기준법 제38조)
 7. ○○○씨는 대형마트에서 홈쇼핑에서 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장판을 구입했다. 그런데 몇 주 사용하던 어느 날 저온에 맞춰 놓고 잠을 자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장치가 고장이 나서 고온으로 가열된 것이었다. ○○○씨는 홈쇼핑 회사에 물건의 교환과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씨

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제조물책임법 제 3,5,8조)

8. 기타 ‘비디오로 배우는 생활법률’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문제 및 해결방법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가정생활과 법률-결혼, 이혼, 상속

(1)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2) 서로 달라요. 헤어져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 학교생활과 법률 -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

(1)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21조)

(2) 학교에서 다쳤어요?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14조, 제34~44조)

* 사회생활과 법률-국적 취득, 부동산 거래, 임금 체불, 사이버 범죄, 소비자 피해 구제 등

(1) 국적 취득은 어떻게 해요? (간이 귀화의 요건-국적법 제6조)

(2)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 인터넷에서 장난한 것인데 처벌받나요?

(5) 물건을 샀는데 결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4) 다문화가정, 법 골든벨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의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법률에 대해 퀴즈 형식을 통해 쉽게 배우게 함으로써 법과 제도에 보장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2.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다문화사회에서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 1.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능력을 길러준다. 2. 법 골든벨을 진행하는 방식과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준다. 퀴즈는 주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이다. | 10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법, 골든벨을 울려라! • 강사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제시한다. • 각 가정은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의논하여 칠판에 정답을 기록한다. •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고, 각 가정별로 정답을 확인한다. • 강사는 정답을 맞춘 가정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풀게 한다. • 틀린 가정은 따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게 하여, 일정 문제 이상 맞춘 경우에 다시 법 골든벨에 도전할 기회를 부여한다. ◎ 활동 2 : 누가 누가 잘 했나? • 강사는 법 골든벨에서 1등을 한 가정에게 시상한다. | 100분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법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10분 |

라. 프로그램의 참고자료 : 법, 골든벨 문제

【 ○ , X 문제 】 (다음 사례가 맞으면 ○, 틀리면 X 표시하시오!)

1. 외국인 근로자 ○○○와 한국인 여자 □□□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X)
2.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1년간 살면서

- 아이를 1명 낳았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X)
3.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결혼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자식을 낳고 부부처럼 10년 이상 함께 살아왔다면(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정조의 의무가 있다. (○)
4.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와 국제결혼하여 혼인신고 없이 자식을 낳고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한국인 남편이 사망했다. 이 경우에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X)
5.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가 한국인 남자 최□□씨는 3년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이혼하였고, 자녀 2명은 외국인 여성 ○○○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몇 년 뒤에 이 외국인 여성은 다른 한국인 남성 박◇◇씨와 재혼하였다. 이 경우에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을 박씨로 변경할 수 있다. (○)
6.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이 여성은 매월 생리통이 심하여 사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장은 생리를 이유로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깎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장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X)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8.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그런데 사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직원에 비해 월급을 더 적게 주었다. 이 사장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X)
9.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주관식 문제 】 (다음 사례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합한 법률용어를 쓰시오!)

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은 무엇인가?
(헌법)
2.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소기업 ◎◎에 취직하여 일한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사장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라며 외국인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음란한 농담을 하여, 이 여성은 매우 불쾌하였다. 이런 경우 사장의 행위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성희롱)
3. 외국인 근로자 ○○○는 한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4년째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투표권 또는 선거권)
4.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과 그 자녀가 한국에서도 베트남의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집단권)

(5) 인권 나무를 통한 다문화 인권의 이해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먼저 인권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만이 누리는 권리라는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고, 일상생활특정한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나무 만들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인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한다.
2.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4. 다른 인종, 민족,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
 적극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한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1.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인권 나무 만드는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소개한다. | 10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인권의 나무 만들기 • 가족별로 전지에 큰 나무 모양을 그리고, A4용지를 활용하여 나뭇잎이나 열매를, 색 종이를 활용하여 열매를 만든다. • 나뭇잎에는 주변 생활(가정, 학교, 동네, 사회생활 등)에서 경험하는 일 들 중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와 그 이유를 적는다. • 열매에는 나뭇잎에 기록된 사례가 어떤 인권과 관련되는지를 생각하여 적는다. • 인권과 관련된 사례를 기록한 나뭇잎과 열매를 전지의 인권 나무에 붙이면서 장식한다. ◎ 활동 2 : 인권에 대해 발표하기 • 가족별로 만든 인권 나무에 대하여 1~2가지 정도 발표하고, 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지를 발표한다. ◎ 활동 3 : 인권에 대해 이해하기 • 가족별 발표가 끝나면, 강사가 인권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해준다. • 강사가 다문화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 60분 |
| 심화 [심화하기] -추가활동 [대처용] | ◎ 활동 4 : 누가 누가 잘 만들었나? • 발표 이후 각 가족이 만든 인권 나무는 강당에 전시하고 모든 가정이 돌아가며 다른 가정의 인권 나무의 내용을 관람하게 한다. • 각 가정은 관람이후 가장 우수한 인권 나무를 1개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권 나무에 대하여 시상한다. • 교육 종료시 인권 나무는 각 가정에 돌려준다. | 40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기본적 권리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인권의 의미와 유형, 주요 인권의 내용을 요약 설명해 준다, | 10분 |

(6) 인권 카드를 통한 다문화 인권의 이해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헌법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눈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주변 생활에서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 프로그램의 목표

1. 헌법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2.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겪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

다.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도입 [들어가기] |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안내(생각해보기) 1. 인권의 눈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카드와 인권 조항 카드를 찾아 서로 연결하고, 왜 그것이 인권 침해인지를 토론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 5분 |
| 전개 [실행하기] | ◎ 활동 1 : 인권 카드 연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족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기록된 카드와 그와 관련된 인권 조항 카드를 각각 나누어 준다. • 가족별로 인권 문제가 기록된 카드와 그와 관련된 인권 조항 카드를 찾아서 서로 연결한다. • 강사는 퀴즈를 통해 바르게 연결된 인권 문제 카드와 인권 조항 카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 활동 2 : 인권에 대해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별로 인권 조항 카드에 의거하여 인권 문제 카드에 기록된 사례가 왜 인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 가족별로 1~2개의 카드를 정하여, 인권 침해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강사가 인권 카드에 기록된 문제와 인권 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 50분 |

|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시간 |
|----|--|----|
| 정리 | ◎ 활동내용정리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준다, | 5분 |

라. 프로그램의 참고자료 : 인권 카드의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는 큰 아들만 좋아하고 딸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 집안일은 여자는 이유로 엄마가 모두 맡아 하신다. * 선생님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 <p>—</p> <p>사람은 인종, 나이, 성별,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는 술 취하면 이유없이 우리를 때리신다. * 힘센 친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기도 한다. | <p>—</p> <p>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몰래 내 방에 들어와서 책상을 조사하신다. * 선생님이 우리의 일기장을 매일 검사하신다. | <p>—</p> <p>우리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은 일이 바쁘시다고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우리들끼리 저녁 먹고 혼자 놀다 잔다. | <p>—</p> <p>아동은 혼자 방치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는데 부모님께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신다. *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싶은데 6시만 되면 도서관이 문을 닫아 버린다. | <p>—</p> <p>우리는 공공기관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권리가 있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부모님은 학원을 몇 군데 다니라고 하신다. * 선생님은 매일 너무 많은 숙제를 내 주셔서 우리는 놀 시간이 없다. | <p>—</p> <p>아동은 휴식하고 놀고 문화생활에 자유를 가진다.</p> |

6. 결 론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문화주의 측면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와 억압을 버리고, 우리와 다른 인종, 민족, 집단 및 그들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화주의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민에게 우리 말과 문화만을 강요하는 적응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과 문화를 보장해주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외국인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 준법생활,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과 민족 및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적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참고문헌]

- 박상준(2003a),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 연구』, 제35권 1호
- 박상준(2003b),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2권 2호
- 박상준(2008),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7권 1호
- 박상준(2009), “중·고등학교의 다문화교육 및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춘계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4. 25.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Banks, J.A(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Beck. U.(2000), 지구화의 길, 조만영 역, 거름
- Koetzsch, R.(2007), 교육이론실천연구회 역, 대안학교 길잡이, 교육과학사
- UNESCO(1978), Some Suggestions on Teaching about Human Rights, 2nd ed. Paris.

2분과 - [주제 3]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발 제 자 : 김 윤 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김 윤 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I. 서 론

남한에 정착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2,809명이 입국하였으며 현재 총 15,057명으로 곧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한만길 외, 2009, p. 1).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입국시킨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10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우리사회 편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사회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언어와 사고방식·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여 남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문화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질감으로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영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언어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소통에 북한사투리를 쓰는 억양의 차이 외에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동질적이라 생각하였던 한국사회가 반세기가 넘는 분단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 언어의 어려움, 사회와의 차이, 편견 등으로 세계의 다른 많은 이주민들이 이민국가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 못지 않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박종윤, 2009, pp. 55-57).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적응에 적응하는데 있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 경제적 어

려움, 남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차이 발생과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과 새터민을 지원하는 법 두 종만 프로그램이 2008년에 개발된 상태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알아야 할 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은 더욱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무엇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 내용선정과 조직의 원리,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프로그램 개발 예시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동등한 법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식체계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의 태도와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1.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법과 인권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즉 법제도 및 질서의 운영실태 등 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법과 법제도에 대한 태도 및 가치 명료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등에 프로그램 개발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험중심의 비공식 교육과정과 내용, 교수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윤진·김윤나, 2006, p. 4).

따라서 교육원리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리보다는, 학습자의 수준, 욕구와 선택을 우선시하는 자발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의 삶과 생활의 필요와 연계되고, 또 실생활에 직접 적용, 활용가능한 교육을 추구하는 현실성의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가능한 교육의 융통성의 원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체험, 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설명중심의 강의식 방법이나 수동적 청취중심의 방법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에 시연실습중심의 체험중심 방법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나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학습자중심의 체험활동 과정의 조력자,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입장과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원리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의 편성 원리로서 제기되는 3가지 원리는 계속성의 원리, 계열화의 원리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이다. ‘계속성의 원리’란 ‘핵심적인 내용이나 주제가 일회적 소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계열화의 원리’란 ‘내용 편성 순서에 있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순서를 맞추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성의 원리’란 ‘학습되는 내용이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관련성을 갖고 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횡적 배열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인권교육 내용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3가지 교육 내용선정 및 조직 원리 중에서도, 특히 계속성과 통합성의 원리가 강조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게 생소하고 기초적인 내용인 지속, 반복되어 기본개념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계속성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고 관련성이 있음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인권교육의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법률관계나 법적 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적인 추상적 사고논리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국가·세계 차원의 법관련 쟁점이나 관계를 분석 이해시켜 나감이 타당할 것이다(최인화, 1992; pp. 27-28).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생활 관계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법교육 과정상의 내용은 처음에 사적이고 개인 본위적인 것에서 점차로 전문적이며 사회 지향적인

법개념 원리들로 배열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상향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나선형의 개념 발달(The spiral development of concept) 형태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적 개념의 발달은 학습자의 성장과 그가 경험하는 법률관계의 의미 확대에 따라 점차 세련되고 발전적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기초 및 개인의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무의 내용을 학습시키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교육, 개인과 국가·공공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학습 내용 구성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3.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시 유의할 점

1)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정치체제는 1당 독재, 수령지배체제로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이 수령과 당의 영도 아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수령·당·계급·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당은 최고 형태의 혁명참모부이자 향도적인 영도 역량인 것이며 수령은 당과 국가를 지도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사상·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거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이란 사전적 의미로 정형화된 일련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나, 학교교육과 대비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의 학습자의 체험중심 및 활동중심의 원리와 틀을 기본으로 전개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

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대상에 대한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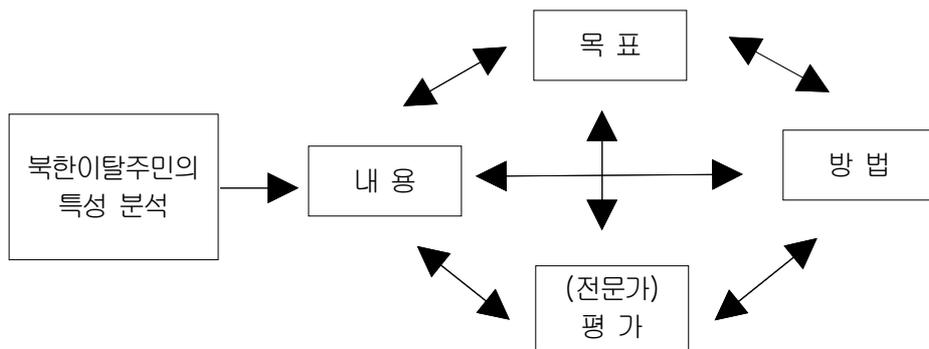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아직 북쪽에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원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가 낮으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직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및 중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둘째, 남한에서 많은 조사와 설문 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참여 동기가 없거나 자발적인 태도가 부족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오면 대성공사에서 간첩인지 아닌지, 정말 북한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받고 하나원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여기저기 설문조사를 많이 받는다. 설문지 양도 많고 설문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많아 글 쓰는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은 자발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아니고 사회주의적으로 지시받는 문화가 주류이기 때문에 설사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기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강의식 교육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주의집중 시간도 짧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자(강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육방법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중심의 프로그램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모색되어 하며 직접 참여하여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의 법과 인권문화에 대한 이해나 태도, 가치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변화시키거나 교정하기 위한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나 일방적인 처벌적인 내용,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프로그램 설계 모형 및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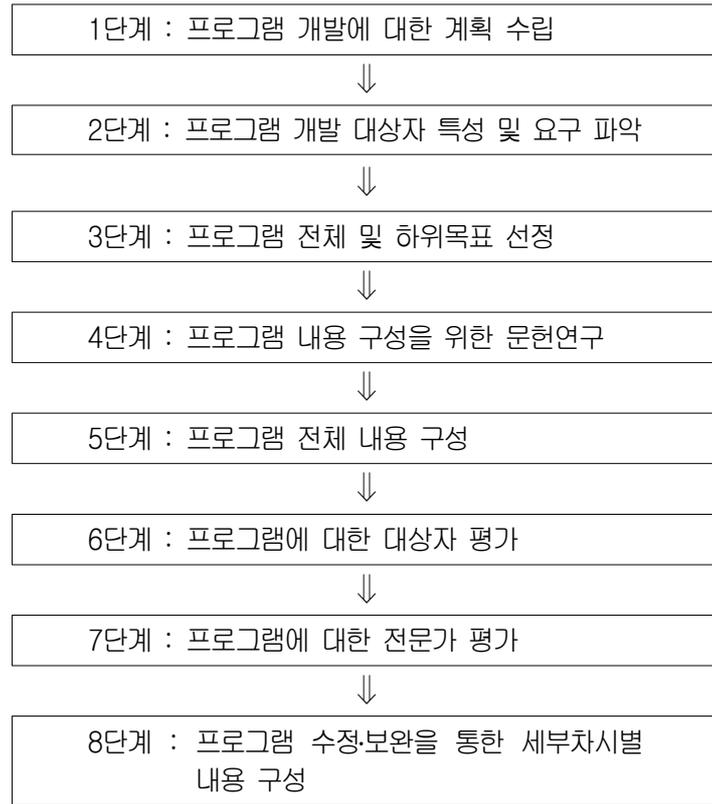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2009년 9월-10월에 걸쳐 3번의 인터뷰 과정을 가졌고 현재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강사에게 인터뷰도 두 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의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설계를 하기 위해 일반 프로그램의 설계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였다. 준비된 내용을 북한이탈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학습방법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개발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프로그램 설계의 원리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전체 목표와 하위목표들을 선정한 뒤 4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해 각종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5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6단계에서 이에 대한 내용확인을 북한이탈주민에게 검토 받았으며 7단계에서는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 8단계에서는 검토 받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세부차시별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계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내

용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되고 논의된다.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III.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법과 인권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법에 대한 개념과 법률용어, 규칙의 중요성, 법과 관련된 기관 등 남한 사람들이면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물론 남한 사람들도 법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 남한 사회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여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둘째,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적 요소로서 신뢰감과 친근감을 기를 수 있도록

록 하였다. 인권을 비롯한 사랑과 관련된 법, 자녀교육, 소비생활, 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 지식과 필요성의 내용을 프로그램화 하여 법이 공정하며 자신의 삶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법이 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으로 인식된다면 결국 법을 지배의 도구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이 자발적 의지가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본 프로그램에서는 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법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법을 사용해보려는 의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겪는 상황과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선별하고 프로그램을 실제 시연하거나 역할극 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응해 나가길 강조하기보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과 남한이 다르다는 이해의 관점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세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한 리더쉽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계 여행, 세계 음식, 세계 축제 문화, 세계의 결혼문화, 세계의 화폐 등 다양한 세계 문화 체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하게 하여 다름이 옳고 그름의 기준과 원칙이 아닌 이해와 발견의 차이임을 알 수 있도록 감수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 목표를 맞추었다. 이러한 원리, 원칙하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활동목표, 세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목표

| 구분 | 프로그램명 | 내용 | 활동목표 |
|----|--------|---|--|
| 1 | 법 입문하기 | 법 입문하기에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에 대한 개념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게임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이 활동을 통해 법이 반드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합의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또한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함께 책임의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란 무엇인지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다. ▶ 규칙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규칙이란 무엇인지 개념정의하도록 한다. ▶ 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학습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내용 | 활동목표 |
|----|---|---|---|
| 2 | NIE(Newspaper In Education)로 알아보는 세계 - 한 세상, 한 세계 만들기 | 신문에서 보도되는 세계문제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감각과 인식을 학습하고 함께하는 문화에 대한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 인권적 측면에서 학습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에서 보도되는 세계문제를 파악하고 실상을 학습하도록 한다. ▶ 세계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 한 세상, 한 세계 만들기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때 필요한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한다. |
| 3 | 인생가치관으로 알아보는 나의 인권 "스나스" |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권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본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 본 인권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고 권리의식과 함께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를 학습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가치관 경매 활동을 통해 나의 인권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여 인권의 개념이 무엇이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학습하도록 한다. ▶ 나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도록 한다. ▶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여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 4 | 눈으로 보는 세계의 맛기행 | 음식(飮食)이라 함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부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요리 전통이나 선호, 관습에 따른 요리를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만큼 조리법과 조리 도구, 선호하는 식품 등이 분화되었다. 어떤 문화 내에서는 그 문화의 종교나 사회적 관념이 어떤 식품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권장하기도 한다. 본 활동에서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음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에게 있어 음식이 생존의 의미인 동시에 문화인류 역사의 한 축이 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 똑같은 재료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음식의 다양성 및 식생활 문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식생활과 관련된 법과 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학습한다. |
| 5 | 세계여행과 에티켓 | 우리는 여행을 통해 다른 세계의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자신이가보고 싶은 세계여행을 기획하고 입,출국 체형 등을 통해 세계적인 에티켓과 매너 등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상대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너이다.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기본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 본 활동과정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떠나고 싶은 세계여행을 기획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화상대적 가치를 학습하도록 한다. ▶ 입,출국 체형, 다른 나라 언어 학습 등을 통해 문화 상대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다름의 인정 등의 문화감수성을 학습하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내용 | 활동목표 |
|----|-----------------|--|--|
| 6 | 세계 축제 탐험전 | 문화는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치이다. 세계의 여러 문화들을 체험하여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성에 대한 자기발견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의 인권 및 권리를 존중할 수 아는 문화적 감수성을 체득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축제 탐험전, 세계 전통의상 Festival, 세계 놀이문화 체험 대항전, 내가 떠나고 싶은 세계여행 등의 다양한 활동중심 체험활동을 통하여 문화상대적 가치를 학습하도록 한다. ▶ 자기주도적인 세계 각국의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문화 상대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다름의 인정 등의 문화감수성을 학습하도록 한다. |
| 7 | 사랑과 법 | 사람이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며 자녀를 키우는 기본적인 삶의 과정이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사랑을 지키고 존중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 활동과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사랑에 대한 표현방법을 학습한다. ▶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 및 권리 수준을 인식하도록 하여 남녀 관계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잘못 알고 있는 성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한다. |
| 8 | 혼인에서 출생까지 |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 살고 싶어하고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 가정이란 것을 꾸려가게 된다.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2세를 만들어 키우게 된다. 본 활동에서는 이러한 삶의 과정속에서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혼인 및 출생관련 법적 서식들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작성하여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대처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라의 혼인문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결혼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작성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학습하고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9 | 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폭력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법에서는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폭력에 대해 알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폭력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다른 유사 용어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내용 | 활동목표 |
|----|------------------|---|--|
| 10 | 자녀교육 길라잡이~~ |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문제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북한과 이질적인 한국의 교육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하며 갈등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은 크나큰 선결과제이다. 본 활동에서는 유용한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유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다양한 자녀교육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자신이 경험한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자녀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교육 책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 11 | 찬란한 노동 |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차시에서는 노동과 소비를 직접적인 역할극 및 시물레이션의 체험활동을 통해 근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법률적 문제 및 내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에 대한 자기 능력 및 타인 능력 이해를 증진시킨다. ▶ 실제 취업 과정 및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 ▶ 직접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 12 | 정승같이 쓰는 생활속 소비활동 |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본 차시에서는 세계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활동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법적 구제활동 등을 알아봄에 다양한 사례를 통한 소비 구제활동을 알아보아 현명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고 돈과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학습한다. ▶ 소비활동시 나타나는 법적인 권리와 법적 구제활동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비 구제활동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표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세부 프로그램 내용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1 | 법 입문하기 | <p>◎ 활동 1 : 법 쟁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대한 느낌 및 생각을 개인별로 쟁가 나무토막에 표현을 해보도록 한다. - 각 모둠별로 쟁가를 싸아 올리거나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발표하여 법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 법이 딱딱하고 어렵고 나오는 거리가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친근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p>◎ 활동 2 : 게임규칙 정하기, 연수 규칙 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가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종이라든지, 신문지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알아보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게임규칙을 정한 후, 게임규칙과 법, 법률, 규칙 등을 정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학습한 후 향후 연수에서 활용될 실제 연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정해진 연수 규칙을 모둠별로 작성한 후, 발표하도록 한다. <p>◎ 활동 3 : 타파☹ 어려운 법률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쉽게 설명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이 법적 용어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 2 | NIE(Newspaper In Education)로 알아보는 세계 - 한 세상, 한 세계 만들기 | <p>◎ 활동 1 : NIE로 알아보는 세계 - 분쟁, 빈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신문기사로 보도된 세계문제에 대한 기사거리를 읽고 기사내용을 파악한 후, 육하원칙에 맞게 기사분석을 실시한다. - 모둠별 활동이 끝나면 각 모둠에서 작성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p>◎ 활동 2 : 지구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교육방송 지식 e-채널의 '지구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에 관한 동영상 혹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준다. <p>◎ 활동 3 : 한 세상, 한 세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가 만약 한 마을이라면 마을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마을의 규칙은 무엇이 될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 마을의 구성요소들이 확인되면, 각각 마을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도록 한다.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으며 각각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지 정해보도록 한다. - 마을의 평화를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제시해보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3 | 인생가치관으로 알아보는 나의 인권 “사나사” | <p>◎ 활동 1 : Go Back(고백)!! 나의 인생가치관 경매활동지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인생가치관 경매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p>◎ 활동 2 : 다 같이 보는 인생가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가치관이 무엇인지 정립해보고, 모든 연수생들이 다 작성했다면 다 같이 인생가치관 경매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 순서별로 인생 가치관에 대해 진행자가 불러주고 이에 대해 연수생들이 경매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한다. -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p>◎ 활동 3 :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법 카드 뒤집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면으로 만들어진 법과 관련된(ex. 국회,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헌법재판소 등) 카드를 모둠별로 뒤집기를 하여 가장 많이 펼쳐진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법이 강제성을 지닌 처벌로서의 존재가 아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 - 또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된다. |
| 4 | 눈으로 보는 세계의 맛기행 | <p>◎ 활동 1 : 눈으로 보는 맛기행 ‘누들로드’</p> <p>제36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누들로드’의 다양한 예고편들을 시청하여 세계의 음식을 통한 인류사 및 공통사를 이해하도록 한다(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 아시아의 부엌을 잇다, 아시아의 부엌을 잇다,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 미래의 만찬, 파스타 오디세이, 국수의 문명사, 기묘한 음식, 누들익스프레스)</p> <p>◎ 활동 2 : 음식모형을 통한 세계의 맛기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모형을 준비하고 이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둠별로 알아맞히도록 한다. - 알아맞히는 모둠에게 음식모형을 선사하여 가장 많은 음식모형을 받은 모둠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 각 음식의 본고장들을 알아보고 이를 지도해 표시하여 세계의 맛기행에 관한 엽서 및 카드를 만들어보도록 한다. <p>◎ 활동 3 : 식생활과 관련된 법 탐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용어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5 | 세계여행과 에티켓 | <p>◎ 활동 1 : 내가 떠나고 싶은 세계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떠나고 싶은 세계의 각국 여행지를 각자가 받은 개별 세계전도에 표시하고, 여행라인을 그리도록 한다. - 자신이 탐방하고 싶은 지역과 그 이유에 모둠별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도록 한다. - 공통으로 나온 지역과 다르게 나온 지역 사례 등을 전체 발표시간에 함께 나눠 다양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p>◎ 활동 2 : 입,출국 체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과정과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도록 한다. - 다른 나라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하였을 때 발생했던 에피소드나 자신의 경험담 등을 소개하고 이때의 에티켓이나 함께 공유해야 할 유의점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p>◎ 활동 3 : 세계의 다른언어, 다른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의미지만 다른 세계의 인사법이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기본적인 언어 표현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각 나라의 부스를 만들어 연수생들이 각각의 나라에 방문하여 그 나라의 인사법, 인사말, 기본언어 등을 사용하여 체득한다. |
| 6 | 세계 축제 탐험전 | <p>◎ 활동 1 : 세계 축제 탐험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공통놀이인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같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축제문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 게임형식으로 각국의 국기와 축제문화를 알아 맞춰보도록 한다. <p>◎ 활동 2 : 세계 전통의상 Festiv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경험하고 싶은 국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6대륙에 관한 쪽지를 만들어 모둠장이 나와 쪽지에 적혀있는 대륙의 전통의상을 가지고 가도록 유도한다. - 6대륙의 전통의상을 모둠별로 입고, 모델 워킹을 시연하도록 한다. <p>◎ 활동 3 : 세계 공통축제문화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공통축제문화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된 축제문화를 만들지 모둠별로 논의하고, 각 모둠의 다양한 공통축제문화 발표시간을 갖도록 한다. - 이러한 발표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7 | 사랑과 법 | <p>◎ 활동 1 : 배워봅시다~ 각 나라의 사랑표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의 사랑표현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학습해본다. - 학습한 사랑표현법을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보도록 한다. <p>◎ 활동 2 : 5자로 말해요. 데이트와 성폭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데이트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각자 돌아가면서 5자로 말해보도록 한다. - 사랑을 하며 행할 수 있는 성적인 행동의 범위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도록 한다. - 이번에는 성폭력은 무엇인지 혹은 어떤 생각, 느낌이 드는지 돌아가면서 5자로 말해보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데이트와 성폭력에 관한 느낌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통해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p>◎ 활동 3 : 내가 아는 O양과 X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테스트한다. - 이 활동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편견 및 고정관념을 타파하도록 하여 인지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 또한 자신의 이성관과 책임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 4 :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탐색하고 거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벌점에 대해 알아본다. - 또한 내가 생각하는 적정 벌점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보도록 한다. |
| 8 | 혼인에서 출생까지 | <p>◎ 활동 1 : 세계의 결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다양한 결혼풍습에 대해 학습한다. - 결혼풍습의 장, 단점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고, 새로운 결혼풍습을 만들어 본다면 어떠한 결혼풍습을 만들어볼지 상상해보도록 한다. <p>◎ 활동 2 : 가상 결혼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부터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이뤄가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역할분담표를 작성해보도록 한다. -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 결혼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떠한 사안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p>◎ 활동 3 : 혼인에서 출생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후의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서식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과정들이 전개될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 실제적인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의 작성을 실시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지 역할극 활동을 통하여 법적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9 | 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 <p>◎ 활동 1 : 폭력에 관한 나의 생각 점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히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폭력에 관한 내용 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폭력과 법에 관한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 누가 O라고 답하고 누가 X라고 답했는지의 여부보다 왜 O가 되는지 혹은 X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폭력과 관련된 법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다. <p>◎ 활동 2 : 폭력과 관련된 개념 연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관련된 법적 용어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학습한다. - 또 이를 개념연결하기 활동을 통하여 용어들과 개념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 3 : 비폭력 5계명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행동강령 5계명을 만들어 자기주도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실천력을 키우도록 한다. - 각자가 만든 비폭력 5계명 중 자신이 맘에 드는 세 가지의 것을 선발하도록 하여 가장 많이 나온 5계명을 전체 집단의 비폭력 5계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강령들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가 정한 비폭력 5계명 및 실천강령들은 각자 개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전체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해두도록 한다. |
| 10 | 자녀교육 길라잡이~~ | <p>◎ 활동 1 : 책으로 알아보는 세계의 자녀교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과적인 세계의 자녀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워보도록 한다. <p>◎ 활동 2 : 효과적인 자녀교육 방법 노하우 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자녀교육 사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효과적으로 부모-자녀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했던 교육사례들을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한다. - 단계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부모-자녀간 서로의 입장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발전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p>◎ 활동 3 : 내가 만드는 자녀교육 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과 2를 통해 알게된 좋은 교육방법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거나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여 자녀교육 책자를 만들어보도록 한다. - 자신이 만든 책자를 공유하면서 모둠별로 돌려보도록 한다. 이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선택한 내용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 11 | 찬란한 노동 | <p>◎ 활동 1 : 내가 할 수 있는 노동~ 네가 할 수 있는 노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 목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하고 간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작성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옆 연수생과 바꿔 서로의 장점, 단점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한다. - 연수생이 작성한 활동지 가운데 잘 작성하여 발표시켰으면 하는 이력서 및 소개서를 추천하도록 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 2 : 노동 4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정에서 실제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4컷의 만화그림으로 그려 학습하도록 한다. - 연수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앞 칠판이나 화이트 보드에 붙인다. - 연수생들이 작성한 만화그림을 토대로 취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p>◎ 활동 3 : 가자! 취업현장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본인들이 선택한 직업대로 취업되는 것을 가정하고 각자가 이에 해당하는 명함들을 만들어 다른 연수생들에게 인사하면서 나눠주도록 한다. - 활동 2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취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가정하고 역할극을 시연해보도록 한다. - 직접 시연한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며, 참관한 연수생에게도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의견을 공유하도록 한다. |
| 12 | 정승같이 쓰는 생활속 소비활동 | <p>◎ 활동 1 : 세계의 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폐전시관, 세계화폐연구소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각 대륙별로 나와 있는 지폐속이야기, 동전속이야기, 우리문화이야기, 위조화폐이야기, 화폐뉴스, 환율조회, 화폐자랑, 위조화폐이야기 등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p>◎ 활동 2 : 소비활동 관리에 대한 괄호넣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On-line 혹은 Off-line 소비활동에서 불편사안을 겪은 사례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한다. - 소비활동시 나타나는 법적인 권리와 법률, 법적 구제활동 등을 소비활동 관리에 대한 괄호넣기를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 정답맞추기를 하여 정확한 법적 소비권리에 대해 내재화하도록 한다. <p>◎ 활동 3 :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 구제활동</p> <p>사례를 통해 다양한 소비활동의 구제사항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익히도록 한다. / 현명한 소비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돌아가면서 현명한 소비활동에 대한 말잇기 게임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활동인지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원치 않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이를 내용증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음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내용증명서를 작성해보도록 한다.</p> |

IV.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있어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법률적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차적으로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체험,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구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별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좀 더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법적 판례 예시,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에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교육방법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직접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보완하여 실제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또한 여러 번의 실시를 통해 이를 검증해나가고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후속연구의 과제 및 과업으로 남기며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다 다양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며 단초가 되길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박종윤(2009),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적응방안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윤진·김윤나(2006), 중등학교 법교육 실태 연구, 38(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중·고교생의 법의식 분석을 토대로-, 한국교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2009), 탈북학생의 교육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
국교육개발원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제5차 학술 발표회 · 제8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인권교육의 국내 · 외적 동향과 확산 방안

2009년 12월 12일 인쇄
2009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발행자 / 허종렬 · 심성보
편집인 / 송민구 · 김선아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사무국
Tel: 02-2125-9893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너머인쇄
Tel: 02-868-6854
